

2019년 확대·개편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김문정 · 김빛마로

2019년 확대·개편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년 확대·개편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2020. 12

김문정·김빛마로

서 언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조세지출 정책 중의 하나이다. 2019년에 근로장려세제의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지원대상도 확대되었으며, 지원요건 역시 완화되었다. 이러한 근로장려세제 확대에 의한 정책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근로장려세제가 수급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근로장려금으로 인하여 소득이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효과이다. 둘째는, 근로장려금으로 인하여 가구의 노동공급 결정이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하여 가구의 근로소득이 변화하는 효과이다. 셋째는 근로소득 변화로 인하여 가구의 복지성 정부보조금의 유형과 금액이 변화하는 효과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효과 중에서 노동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본 연구의 주요 기여점은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직접 구축했다는 점에 있다. 기존의 재정패널조사나 복지패널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서 근로장려세제 수급인원을 파악할 수 있으나, 해당 조사에 포착된 근로장려금 수급인원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고의 설문조사는 근로장려세제만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된 만큼, 분석표본 규모가 1,600가구로 상당히 크다. 또한, 저자들은 정책의 인과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의 설계시점부터 가구 자산기준으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였다. 가구자산의 주요 구성요소인 '부동산의 경우' 설문조사 대상 가구의 거주지의 실제 공시지가를 활용하여 분석에 사용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

본 연구는 본원의 김문정 부연구위원과 김빛마로 부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저자들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구축 및 연구방향을 설정할 때 큰 도움을 주신 신상화 충남대 교수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연구내용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신 본원의 이상엽 선임연구위원과 오종현 연구위원,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마지막으로 익명의 두 명의 평가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함을 밝혀 둔다.

2020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유 찬

요약 및 정책시사점

본 연구는 2019년 확대 개편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의 노동공급 효과를 분석하고자 이를 위하여 직접 가구대상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고에서의 정량분석 전략은 EITC 개편안이 시행되었을 때 잠재적 수급가구가 수급 가능성이나 수급액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소득이 가구조건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자산요건을 쉽게 바꿀 수 없으리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전제가 맞다면 생활여건이 비슷한 상황에서 2억원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2억원을 초과하되 크게 벗어나지 않은(예를 들어 3억원 이하) 가구는 적절한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 분석 시, 자산요건을 만족하는 가구는 처지집단으로, 자산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가구는 비교집단으로 상정하여 이중차이법을 적용하였다. 한편 정량분석에서 노동공급의 수준은 경제활동 참가 여부, 주된 일자리에서의 주당근로시간, 월평균 임금, 시간당임금,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2019년 근로장려세제 개편안으로 인한 노동공급 효과가 특정 집단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전체에 대한 이중차이법을 적용했을 때는 노동공급의 모든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구 유형별로 집단을 나누었을 경우 단독가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대체지표로 자산을 측정한 경우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단독가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주된 일자리에서의 주된 근로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월평균임금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홀벌이가구주, 맞벌이가구주, 맞벌이가구의 배우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노동공급 효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소득구간별 노동공급 효과를 검토했을 때, '점증구간'에 속하는 가구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근로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 유형별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해석할 때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본고에서는 홀벌이와 맞벌이의 가구유형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였고, 홀벌이와 맞벌이를 정의할 때 각

가구에서 보고하는 '가구주'의 개념에 착안하여, 상대적인 임금수준을 비교하지는 않았다. 가구주-배우자, 혹은 남성-여성으로 구분한 가구분석은 추가적으로 더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향후 연구로 남겨둔다.

두번째로,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노동공급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해서 본 제도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또 다른 목적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핀셋 지원을 통하여 소득불평등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2019년 근로장려세제의 개편에서 점증구간보다 점감구간이 더 확대된 것을 고려하면, 노동공급의 효과보다 소득재분배의 기능에 더 방점을 두어 근로장려세제가 개편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점감구간의 노동공급 감소 효과가 발견된다면,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재분배효과 및 점증구간의 노동공급 증진효과가 이러한 부(-)의 효과를 상쇄할 만큼 큰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II. 2019년 확대·개편된 근로장려세제 개관	3
1. 2019년 근로장려세제 개편안	3
III.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관련 기존 연구	10
IV. 설문조사의 구성과 설계	16
1. 설문조사 설계	16
2. 설문조사 문항 개관	17
V. 분석 방법	21
1. 연구목적과 분석 대상	21
2. 계량 모형	22
VI. 분석 자료	24
1. 자료 소개 및 변수 구축	24
2. 기초통계량	28
3. 노동공급 관련 데이터패턴	37
VII. 분석 결과	44
1. 기본 모형 분석 결과	44
2. 소득구간별 노동공급 효과	48
3. EITC 제도 인지 수준별 노동공급 효과	53
4. 20대 가구주의 노동공급 효과	56
5. 강건성 분석 - 재산요건 대체변수	56

VIII. 결론	59
<참고문헌>	62
<부록> 1. EITC의 소득재분배 및 기타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65
2. 2019년 가구단위 경제활동 조사	69

표목차

〈표 II-1〉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 금액	4
〈표 II-2〉 가구 유형 분류 기준	4
〈표 II-3〉 재산 요건	4
〈표 II-4〉 가구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5
〈표 II-5〉 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산정방법	6
〈표 II-6〉 근로장려세제 주요 개정 내역	8
〈표 II-7〉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주요 개정 내역	9
〈표 III-1〉 EITC의 노동공급 효과 관련 선행연구	14
〈표 IV-1〉 설문조사 문항 구성	17
〈표 VI-1〉 재정패널조사 및 복지패널조사의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 비중	25
〈표 VI-2〉 가계금융복지조사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 추정치	27
〈표 VI-3〉 주요 문항별 응답 비율	28
〈표 VI-4〉 EITC에 대한 인지 여부 응답 결과	30
〈표 VI-5〉 EITC 신청요건 인지 여부 응답 결과	32
〈표 VI-6〉 EITC 지급액 산정기준 인지 여부 응답 결과	33
〈표 VI-7〉 EITC 신청 및 수급 가구 비중 변화(임금근로자)	35
〈표 VI-8〉 EITC 신청 및 수급 가구 비중 변화(가구 내 특수형태근로자 있는 경우)	37
〈표 VII-1〉 가구주의 노동공급 효과: 모든 가구 유형	45
〈표 VII-2〉 가구주의 노동공급 효과: 가구 유형별	46
〈표 VII-3〉 배우자의 노동공급 효과: 맞벌이가구 유형의 경우	47
〈표 VII-4〉 부부의 노동공급 효과: 맞벌이가구 유형의 경우	48
〈표 VII-5〉 2018년 가구 근로소득별 이질적 노동공급 효과	49
〈표 VII-6〉 2018년 가구 근로소득별 이질적 노동공급 효과: 가구 유형별	51
〈표 VII-7〉 2018년 가구 근로소득별 이질적 노동공급 효과: 하위표본 구성	52

〈표 VII-8〉 EITC 제도 인지 수준별 이질적 노동공급 효과	54
〈표 VII-9〉 EITC 제도 인지 수준별 이질적 노동공급 효과: 가구 유형별	55
〈표 VII-10〉 20대 가구주의 노동공급 효과: 단독가구 유형	56
〈표 VII-11〉 가구주의 노동공급 효과(재산요건 대체변수)	58

그림목차

[그림 II-1] 가구 구성 및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규모	6
[그림 VI-1] 가구 총재산금액 구간별 가구주의 노동공급: 2018년 vs 2019년 ..	38
[그림 VI-2] 가구 총재산금액 구간별 배우자의 노동공급: 2018년 vs 2019년 ..	39
[그림 VI-3] 단독가구 유형 가구주의 노동공급: 2018년 vs 2019년	40
[그림 VI-4] 홑벌이가구 유형 가구주의 노동공급: 2018년 vs 2019년	41
[그림 VI-5] 맞벌이가구 유형 가구주의 노동공급: 2018년 vs 2019년	42

I. 서론

2018년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2019년부터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가 큰 폭으로 확장되었다. EITC가 본래 목표로 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유인 제공이라는 정책의 효과가 실제로 실현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2019년 확대·개편된 EITC의 노동공급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EITC를 추가적으로 개편하거나, 소득층별 조세재정 정책을 설계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9년 확대·개편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직접 가구대상 설문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기존의 한국복지패널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 재정패널조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경우 조사 시점과 발표 시점 간 2년간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보다 시의적절한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패널조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가구수가 제한적이어서 구성효과 혹은 수혜 집단의 이질성에 따른 이질적인 노동공급 효과 등을 고려할 수 없는 등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설문조사는 EITC 지급가구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로서 이와 관련하여 기존 패널조사보다 풍부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료를 일부 이용하여 조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재정패널조사 등과 달리 응답자의 응답 내용에만 기반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측정오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점에 대해 해석상의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본원이 닐슨코리아에 의뢰하여 수행한 설문조사 자료이다.

2020년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설문조사가 수행되었다. 8월 말에는 시범조사를 통하여 100가구를 먼저 조사하였고, 시범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설문문항을 보완하여 1,500가구를 추가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가구주 및 배우자의 2018년 상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의 경제활동 상태, 가구원 구성 및 각 구성원의 개별 특징, 가구의 자산 현황 등을 파악 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기본적인 EITC의 노동공급 효과의 판별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8년 세제개편안을 통하여

2019년에 EITC가 확대·개편되었고, 이에 대한 정보를 2019년 1월 시점에 잠재적인 EITC 수급대상 가구가 인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확대된 EITC 제도는 2019년 EITC 수급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가구주나 배우자의 노동공급을 내생적으로 변화시킬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잠재적 대상가구의 노동공급의 내생적 변화는 EITC 수급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다른 가구의 노동공급과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Ⅱ. 2019년 확대·개편된 근로장려세제 개관¹⁾

1. 2019년 근로장려세제 개편안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세금환급 형태로 시행되었다. 사회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양분되어 있던 기존의 사회복지제도하에서 복지혜택에서 배제되었던 차상위계층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3에 도입 목적,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산정 방법,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의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부모가 없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부양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총소득 요건은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이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표 II-1〉 참고). 단독가구는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혹은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표 II-2〉 참고.)

마지막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재산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표 II-3〉 참고)할 수 있다.

1) 본 장의 제도 설명은 신상화·김문정(2019)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표 II-1〉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 금액

(단위: 만원)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	3,000	3,600

자료: 신상화·김문정(2019), p. 20, 〈표 II-1〉 인용

〈표 II-2〉 가구 유형 분류 기준

가구 유형	기 준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음
홀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 300만원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 300만원

자료: 신상화·김문정(2019), p. 20, 〈표 II-2〉 인용

〈표 II-3〉 재산 요건

재산 합계액	재산요건 충족 여부
1억 4천만원 미만	요건 충족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요건 충족 단,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
2억원 이상	요건 미충족

자료: 신상화·김문정(2019), p. 21, 〈표 II-3〉 인용

다음의 신청 제외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표 II-4〉 가구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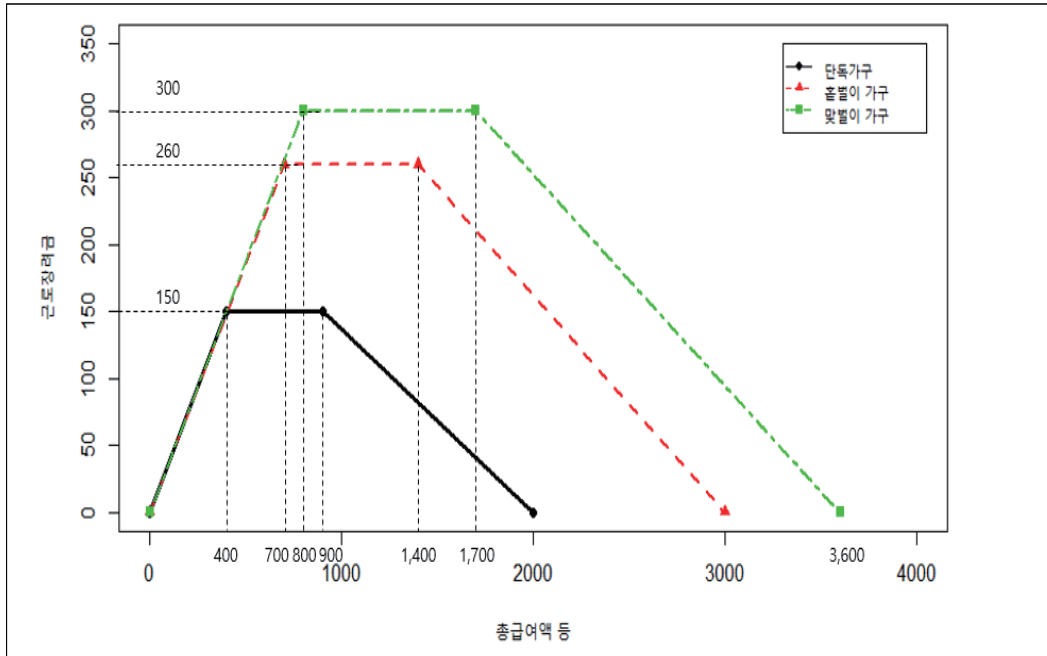
가구 구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100분의 150
홀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1,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1,900분의 300

자료: 신상화·김문정(2019), p. 22, 〈표 II-4〉 인용

근로장려금의 지원금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총급여액이 증가할수록 지원금액이 같이 증가하는 점증구간, 근로장려금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평탄구간, 총급여액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으로 구성된다(〈표 II-4〉, [그림 II-1] 참고).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은 해당 총급여액의 400분의 150, 총급여액 400만~900만원 구간에서는 150만원, 총급여액 900만~2천만원 구간은 150만원에서 (총급여액 - 900만원)×1,100분의 150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된다. 홀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700만원 미만은 해당 총급여액의 700분의 260, 총급여액 700만~1,400만원 구간에서는 260만원, 총급여액 1,400만~3천만원 구간은 260만원에서 (총급여액 - 1,400만원)×1,600분의 260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8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의 800분의 300, 총급여액 800만~1,700만원에서는 300만원, 총급여액 1,700만~3,600만원에서는 300만원에서 (총급여액 - 1,700만원)×1,900분의 300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된다.

[그림 II-1] 가구 구성 및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규모

(단위: 만원)



자료: 신상화·김문정(2019), p. 23, [그림 II-1] 인용

한편 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표 II-5>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5만큼이 근로장려금으로 결정된다.

<표 II-5> 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산정방법

기간	총급여액 산정식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	(해당 기간 총급여액 등/근무월 수) × (근무월 수 + 6)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자료: 신상화·김문정(2019), p. 23, <표 II-5> 인용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 종료 이후에는 6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90만큼의 지원금액만 지급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동시에 한 경우에 지급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만으로 지급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을 받으려는 거주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주자 사망 시 거주자의 상속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주소득자인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가구 내에서 2명 이상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거주자 1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연 2회로 신청하여 근로장려금 수급기간을 이전보다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반기신청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급횟수도 기존의 연 1회(매년 8월)에서 연 2회(매년 6월 말, 12월 말)로 변경되었다.

근로장려세제의 제도 연혁은 <표 II-6>, <표 II-7>을 참고할 수 있다. 2006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시행 근거가 마련되어 2008년 시행,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가구요건의 경우, 부양자녀 요건이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변경(2009년)되었고, 무자녀가구에도 지급(2012년)되기 시작하였다.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근로소득자와 탈기초수급자 포함(2013년)되었으며, 이듬해 현재와 같은 단독·홀벌이·맞벌이가구 유형으로 변경(2014년)되었고,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포함(2018년)되었다.

지급대상의 경우, 근로소득자 외 보험모집원, 방문판매원이 포함(2012년)되었고, 전문직 제외 자영업자가 포함(2015년)되었으며, 종교인과 대한민국 국적으로 부양자녀 존재 시 신청 가능(2017년)해졌다. 주택요건의 경우, 기존 무주택세대에서 2009년 소규모 1주택(5천만원 이하)으로 변경되었고, 2017년에는 주택요건이 폐지되었다.

재산요건의 경우 기존 1억원 미만에서 1억 4천만원 미만으로 2014년 변경되었고, 2019년에는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었다.

〈표 II-6〉 근로장려세제 주요 개정 내역

연도	2009	2012	2013	2014	2017	2018	2019
적용 대상	근로소득자	보험보 집인, 방문 판매원 포함	2015년부터 자영업자 포함 되도록 개정	-	-	종교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포함	-
부양 자녀	1인 이상 부양 (18세 미만)	무자녀 가구 포함(단, 배우자 필요)	60세 이상 단독가구 포함	2016년부터 50세 이상, 2017년부터 40세 이상 가구 포함	2018년부터 30세 이상 가구 포함	-	단독가구에 대한 나이 제한 폐지
재산 요건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등 합계액 1억원 미만	-	-	1억 4천만원 미만(1억원 초과 시 장려금 50% 감액)	-	-	2억원 미만(1억 4천만원 초과 시 장려금 50% 감액)
주택 요건	5천만원 이하 1주택 보유 가구 포함	6천만원 이하 1주택 보유 가구 포함	-	1주택 가격 기준 폐지	주택 요건 폐지	-	-

자료: 신상화·김문정(2019), p. 27, 〈표 II-6〉 인용

〈표 II-7〉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주요 개정 내역

개정연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2008 (최초 시행 당시)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분의 10	
	8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80만원	
	1,2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1,700만원 - 총급여액 등) × 100분의 16	
2012	부양자녀 없는 경우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분의 7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1,300만원 - 총급여액 등) × 40분의 7
	부양자녀 3인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분의 2
		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200만원
		1,2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2,500만원 - 총급여액 등) × 13분의 2
2014	단독 가구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0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7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400분의 70
	홀벌이 가구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70
		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170만원
		1,200만원 이상 ~ 2,100만원 미만	170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 900분의 170
	맞벌이가구	1천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10
		1천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210만원
		1,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210만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원) × 1,200분의 210
2018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100분의 150
	홀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2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1,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1,900분의 300

자료: 신상화·김문정(2019), p. 28~29, 〈표 II-7〉 인용

Ⅲ.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관련 기존 연구

본 장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를 소개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그 효과에 대한 다수의 실증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크게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살펴본 연구와 소득재분배 등 제도의 기타 효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9년 확대·개편된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는 것뿐 아니라 소득을 지원하는 것도 제도의 목적 중 하나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재분배 등 기타 효과와 관련된 문헌들에 대해서도 부록에서 별도로 제시하였다.

EITC의 노동공급 효과를 분석한 해외 연구로는 Dickert et al.(1995), Keane(1995), Eissa and Liebman(1996), Ellwood(2000), Meyer and Rosenbaum(2001), Eissa and Hoynes(2006) 등이 있다. Dickert et al.(1995)은 미국의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데이터를 이용한 미시모의실험모형(microsimulation model) 분석을 통해 1993년의 EITC 확대에 한부모가구 또는 일반 가구 주소득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보였다. 이러한 효과는 기존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효과에 의해 일부 상쇄되지만, 일반적인 가정²⁾하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효과가 기존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효과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Keane(1995)는 구축한 노동공급 모형(labor supply model)을 simulated 최우추정법(method of simulated 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해 추정한 후 정책실험을 통해 5,750달러(1984 미국달러 기준)까지의 소득에 대해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경우³⁾ 기존 제도(10% 세액공제율

2) Dickert et al.(1995)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이 20주에 걸쳐 매주 20시간 노동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3) 이는 1996년 미국에 적용된 제도 변화이다.

적용)에 비해 여성 한부모가구주의 비근로 비중이 10.7%p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만 이를 위해 소요되는 기존 제도 대비 비용 증가율 역시 9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issa and Liebman(1996) 역시 EITC 확대 이후 여성 한부모가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함을 보였으며, Ellwood(2000), Meyer and Rosenbaum(2001), Eissa and Hoyens(2006)도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Hoynes and Patel(2018)이 미국의 CPS(Current Population Survey)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EITC가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영향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⁴⁾ Hoynes and Patel(2018)에 의하면 미국의 1993년 EITC 확대는 여성 가구주의 고용을 증대시켰으며, 1자녀 여성 가구주는 무자녀 여성 가구주에 비해 6.1%p, 2자녀 여성 가구주는 1자녀 여성 가구주에 비해 6.2%p 고용이 증가하였다. 요약하면, 해외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미국 EITC 확대로 인해 여성 한부모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제고된다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최근 Kleven(2019)은 미국 EITC의 확대가 외적 한계(extensive margin), 즉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Kleven(2019)은 1975년 미국의 EITC 도입 이후 국가 혹은 주(state) 단위에서의 모든 제도 변화를 이용한 이벤트 스터디(Event Study) 분석을 통해 1993년 EITC 확대 이후 관측된 고용 증대 효과는 기타 복지제도의 변화 및 거시경제 호황에 의한 것이며 EITC는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추정결과를 보였다.

EITC의 확대가 경제활동참여율 또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하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반면,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가 공존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Keane(1995)는 EITC 확대로 경제활동참가율뿐 아니라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 역시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EITC 세액공제율이 10%에서 30%로 증가하는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시간, 40%로 증가하는 경우 2.4시간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Grogger(2003) 역시 EITC의 한도가 1천달러 증가할 시 신생아가 있는 가구주의 근로일수가 약 1.2주 증가하며, 가구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EITC가 근로시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Eissa and Liebman(1996)과 Cancian and Levinson(2006)은

4) Hoynes and Patel(2018)는 EITC가 빈곤 수준 및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 분석이지만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추정결과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EITC 확대에 의한 근로시간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Hoffman and Seidman(1990)은 EITC 점증구간의 경우 근로시간 효과가 불분명한 반면, 평탄 및 점감구간의 경우 가구주의 근로시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EITC가 노동공급, 빈곤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한 국내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김재진 외(2014)는 2008~2012년 국세청 원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 수급자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 수급자 집단이 비수급자 집단에 비해 경제활동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남을 보였다. 강성호(2017)는 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해 근로장려세제가 경제활동참여율 및 근로월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장려세제 수급자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비수급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급자인 경우 수급액이 증가할수록 경제활동참여율은 감소하지만 근로시간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종석 외(2017)는 2008~2015년 국세청 원자료 및 재정패널 자료를 통해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 효과, 노동공급 효과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장려금이 수급자의 고용안정성, 경제활동참가율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EITC의 고용 및 근로일수에 미치는 효과 중 일부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대웅 외(2015)의 경우 2개년도 복지패널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이 수급자의 취업률을 증가시키지만 근로개월 수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음을 보였다. 신우리·송헌재(2018)는 부부가구와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의 노동공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점증구간 가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근로개월수는 증가한 반면, 평탄 및 점감구간에 속하는 가구 중 부부가구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근로개월수가 모두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한부모가구의 경우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실증적으로 관측되지 않았다. 또한 정의룡(2014), 홍민철 외(2016) 등은 근로장려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정의룡(2014)에서는 개별 가구원의 경우 근로일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가구주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근로일수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민철 외(2016)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해서는 분석 자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 반면, 근로시간의 경우 대체로 부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혜·이정민(2018)은 2008년 이후 우리나라의 EITC 수급자격 요건 및 급여체계 변

화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노동 공급 결정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총소득요건을 제외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근로장려금의 경제적 유인 변수’가 가구주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자료로는 복지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노동패널, 재정패널 등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EITC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일부 자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이 관측되었으나, 다른 일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저자들은 EITC가 노동시장 참여에 뚜렷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13년으로 분석 기간을 한정할 경우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EITC가 사업소득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을 인정할 때 따른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한종석 외(2019)는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 모형을 통해 2019년 근로장려세제 개편이 가구형태별 노동공급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은 EITC의 확대로 고용률은 상승하지만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총자본과 유효노동이 감소하여 총생산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근 박지원(2020)은 준모수적 선형모형과 표본선택모형을 고려하여 처치의 외연 및 내연 효과를 분리하고 총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Lee(2017)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의 노동공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박지원(2020)은 EITC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참여(외적 한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기존 취업자의 노동공급에는 영향력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표 III-1〉 EITC의 노동공급 효과 관련 선행연구

구분	연구목적	분석자료	연구방법론	주요 결과
Dickert et al. (1995)	- EITC 확대가 근로시간,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 분석	SIPP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 미시모의실험 모형 분석	- 1993년의 EITC 확대로 한부모가구 또는 일반 가구 주소득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의미하게 증가 -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효과가 기존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효과에 비해 큰 것으로 추정
Keane (1995)	- EITC를 포함한 복지제도 변경의 노동공급 효과를 분석	SIPP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 노동공급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추정된 후 정책실험을 통해 분석	- EITC 세액공제를 증가 시 여성 한부모가구의 비 근로 비중이 감소 - EITC 확대로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 역시 증가 - 다만, 이를 위해 소요되는 기존 제도 대비 비용 증가율 역시 9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Groger (2003)	- EITC를 포함한 복지제도 변경이 여성 가구주 가정의 복지수혜, 노동, 임금에 미치는 효과 분석	CPS (Current Population Survey)	- 고정효과 회귀분석	- EITC의 한도 증가 시 신생아가 있는 여성 가구주의 근로일수가 증가 - 여성 가구주의 내이가 증가할수록 EITC가 근로시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
이대웅 외 (2015)	- 근로장려세제의 경제활동 참여 및 근로시간, 근로임금에 미친 효과 분석	복지패널(2009, 2013)	- 근로장려세제 시행 전후 자료를 이용한 성향점수매칭 및 매칭이중차이 모형 분석	- 근로장려세제 도입 시 저소득층의 취업확률과 근로소득이 증대 - 남성은 취업 여부, 여성은 근로소득에 상대적으로 더 큰 증가폭이 도출됨
홍민철 외 (2016)	-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빈곤 감소 효과 분석	복지패널(2007, 2011) 노동패널(2007, 2011) 재정패널(2008, 2011)	- 근로장려세제 시행 전후를 이용한 매칭 이중차이모형 분석	- 분석 자료별로 상이한 결과 도출 - 노동공급의 경우 복지패널 및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부정적 효과 추정됨
강성호 (2017)	- 근로장려세제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근로시간 효과 추정	복지패널(2005~2015)	- 패널분석	- 근로장려금 시행 이후 수급자의 경제활동참여율과 근로개월수가 증가
인종석 외 (2017)	-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 소득재분배, 노동공급 효과분석	국세청 미시자료 (2008~2015) 재정패널(2009~2015)	- 전이확률행렬 - 이중차분모형 - 2011, 2013, 2014 제도 확대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 근로장려금은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소득재분배효과가 있으며, 수급자에게 근로유인 효과가 있고,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1〉의 계속

구분	연구목적	분석자료	연구방법론	주요결과
박지혜·이경민 (2018)	- 근로장려세제가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추정	복지패널(2006~2017) 가금복(2012~2017) 노동패널(2005~2016) 재정패널(2010~2016)	-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 수급자격 요건 및 급여체계 변화를 이 용한 회귀분석	- 분석 자료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유의하지 않은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남 - 2013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한정했을 때 노동시 장 참여에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남
신우리·송한재 (2018)	- 근로장려금의 부가구와 한부모 가구의 소득구간별 노동공급 효과 분석	복지패널(2008~2011)	- 이층차분모형을 확장한 고정효 과모형 - 근로장려세제 시행 전후 분석	- 근로장려금은 점증구간에 속하는 가구의 노동공 급은 증가시키며, 평탄구간 및 점감구간에 속한 가구 중 부부가구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호 과가 있으나 한부모가구에는 노동공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Hoynes and Patel (2018)	- EITC의 빈곤, 소득재분배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CPS(1985~2014)	- 1983년 및 1984~1998년 제도 확대를 이용한 이층차분모형 분석	- EITC는 여성가구주 고용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 며, 그 효과는 자녀가 많은 여성가구주에게 더 크게 나타남
한종석 외 (2019)	- 2019년 근로장려세제 개편이 가 구형태별 노동공급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노동패널, 지역별고용조사	- 이질적 경제주체 상애주기 모 형 구축 및 캘리브레이션 후 정 책 분석	- EITC의 확대로 고용률은 상승하지만 근로시간은 감소 - 총지분과 유효노동이 감소하여 총생산 감소
박지원 (2020)	- 근로장려세제 노동공급 효과 분석	복지패널(2016~2018)	- EITC 수급 여부에 따른 노동공 급 효과를 OLS-PSR 모형을 통 해 분석	- 근로장려세제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 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기존 취업자의 노동공 급에는 영향력이 미미하거나 부정적
Kleven (2019)	- EITC가 고용(인적) 한계에 미치는 효과 분석	CPS(1968~2017)	- 1975년 제도 도입 이후 미국 의 모든 제도 변화를 이용하여 이벤트 스타티 분석	- EITC는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음 - 데이터에서 관측되는 고용 증대는 동시기에 적 용된 기타 복지제도 및 경제적 호황에 따른 것 으로 분석

자료: 저자 작성

IV. 설문조사의 구성과 설계

1. 설문조사 설계

2019년 EITC 개편의 노동공급 효과를 파악하고자 저자들은 2019년 하반기부터 설문조사 자료를 구축하고자 계획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은 행정자료나 패널 등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2019년 노동공급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2019년 확대·개편된 EITC의 노동공급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EITC 관련된 행정자료 입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존의 조사자료의 표본에서 포착된 EITC 수급가구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예산과 조사기간 등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어떠한 측면에서 EITC 개편의 노동공급 효과를 살펴볼 것인지를 선정해야 했다. 특히 분석대상으로 한정할수록 충분한 설문조사 표본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먼저 설문조사 분석대상으로 사업자를 제외하고 근로자나 특고종사자에 국한하였다. 사업자의 경우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EITC 수급요건에 맞추어 사업소득 등을 조정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자들 대상으로 2019년 확대·개편된 EITC의 노동공급 효과를 설문조사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예상했다.

이상적으로는 2019년 확대·개편된 EITC의 노동공급 효과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잠재적 수급가구의 EITC 개편 이후 노동공급 수준과 EITC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상적인 상황하에서의 노동공급 수준을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상적 상황하에서의 노동공급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연구자들은 가상적인 상황에서의 처리군(EITC 수급가구)의 노동공급 수준을 예상하게 하는 비교군(control group)을 사전에 상정하고자 했다. 처리군은 2019년 확대·개편된 EITC의 수급대상이 되는 가구라고 할 때, 비교군을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것에 여러 가

지 방법이 존재하지만 본 설문조사에서는 ‘자산요건’을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노동 공급이나 총급여 수준은 EITC 수급을 목적으로 가구의 가구주나 배우자가 내생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자산수준은 1년 내에 큰 폭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EITC 수급요건을 만족시켜 근로장려금을 수급받기 위하여 가구 내 자산형성의 속도나 자산 규모를 내생적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구의 자산의 규모를 사전에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나, 공시가격 제도를 사전적으로 파악하여 공시가격이 EITC 자산 관련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100가구를 우선 시범조사 한 후, 나머지 가구에 대하여 본격 조사하였다. 시범조사 후 설문문항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범조사 가구에 연락을 취하여 모든 가구에 대한 응답자료를 일치시켰다.

2. 설문조사 문항 개관

본 소절에서는 구체적인 설문조사 문항에 대해 논의한다.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및 설문조사 대상가구 여부를 확인하는 섹션과 본격적인 설문을 진행하는 총 8개의 파트로 구성되었다.⁵⁾

〈표 IV-1〉 설문조사 문항 구성

구분	조사내용	주요 조사항목
기본 조사	응답가구 기본사항 및 설문조사 대상가구 여부 확인	- 가구주 여부, 거주 형태, 거주기간, 거주지역, 거주지 시세, 가구원 수, 종사상 지위 등
파트 1	가구원 인적 사항	- 각 가구원별 성별, 출생연월, 혼인상태,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 등
파트 2	주거 점유형태	- 주거 점유형태, 전세·월세 보증금, 월세금액, 공공임대 종류 등
파트 3	가구주·배우자의 경제활동	- 2018년 상반기·하반기, 2019년 상반기·하반기, 2020년 상반기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의 경제활동 수행 여부, 경제활동 수행 시기, 일자리 변경 시기, 구직활동 개월 수, 주된 일자리 기준 월평균임금, 주당 근로시간, 고용형태, 계약기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5) 설문지 원본은 부록에 별도로 제시함.

〈표 IV-1〉의 계속

구분	조사내용	주요 조사항목
파트 4	근로장려금 제도 인지 여부	- 근로장려금에 대한 인지 정도, 제도 취지에 대한 인지 여부, 소득요건, 가구요건, 재산요건, 신청자격에 대한 인지 여부, 점증·유지·감소구간에 대한 인지 여부 등
파트 5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	- 2018~2020년 상반기의 근로장려금 신청 여부, 신청연월, 국세청 안내 공지를 받았는지 여부, 근로장려금 실제 수급 여부 및 수급연월(해당자의 경우) 수급을 받지 못한 이유 등 - (2017년 귀속분 또는 그 이전) 신청 경험 유무
파트 6	가구 소득	- 각 가구원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 업종,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
파트 7	공적이전 소득 수급 여부	- 각 가구원별 공적이전 소득 수급 여부 및 수급총액 - 보험급여금(연금식, 일시금), 기초연금, 농어업정보보조금,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국민연금·특수지역연금 등
파트 8	가구 자산	- 소유 부동산 공시지가, 소유 자동차 유무, 차량 구매방식, 최초 구입연도, 차량 제조연도, 구입 당시 가격, 전세금 존재 유무, 금융자산 보유 유무 및 총 금액 등

자료: 저자 작성

먼저 응답가구 기본사항에서는 응답자의 가구주 여부, 현재 거주 형태, 거주지 법정동 및 우편번호코드를 조사한다. 응답자의 가구주 혹은 가구주 배우자로 표본을 한정함으로써 해당 가구에 대한 응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2019년 말 기준 거주지 시세(공시지가), 가구원 수 등 EITC 수급요건과 관련된 사항들도 응답가구 기본사항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종사상 지위를 임금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타 및 무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EITC 제도 변화에 따라 노동공급 결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여지가 크지 않은 고용주·자영업자는 조사를 중단하였다.

총 8개의 파트 중 첫 번째에서는 가구주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별 인적 사항을 조사한다. 성별, 출생연월, 혼인상태,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 관련 문항, 및 경제활동 상태를 조사하는데, 이러한 정보 중 일부는 EITC 수급요건 충족 여부 판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며, 일부 정보는 EITC 확대 개편의 효과가 개인 특성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앞서 살펴본 다수의 해외 선행연구에서는 가구주 성별, 자녀 수 등에 따라 EITC 제도 변화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응답자의 주거 점유형태에 대해 조사한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주거 점유형태를 질문한 후, 해당자의 경우 전세·월세 보증금 금액, 월세 금액, 공공임대 종류 및 공공임대 보증금 금액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EITC 제도 확대 공표(2018년 9월) 또는 적용(2019년) 전후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2018년 상반기·하반기, 2019년 상반기·하반기, 2020년 상반기에 대해 경제활동 수행 여부, 경제활동 수행 월, 일자리 변경 시기, 구직활동 수행 개월 수를 조사하였다. 또한 각 시기별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월평균 임금, 주당 근로시간, 고용형태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경제활동 수행 여부와 근로시간 정보는 확대 개편된 EITC 제도가 공표된 시기 또는 실제 적용된 시기를 기준으로 경제주체들이 노동 공급 관련 유의미한 행태 변화(외적한계 및 내적한계)를 보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EITC 제도에 대해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경제주체들이 EITC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경우 이들이 제도 변화에 반응하여 행태를 변화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에 본 설문조사에서는 제도 변화가 실제 적용되었던 201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제도 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EITC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이해 수준, 제도 취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묻고, 변경된 제도를 기준으로 소득요건, 가구요건, 재산요건,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였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원 상한액이 점증구간, 유지(평탄)구간, 감소구간으로 이루어진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특히 점증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증가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다섯 번째 파트에서는 EITC 신청 및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이 되는 2018~2020년 상반기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여부, 신청 연월, 국세청 안내 공지를 받았는지 여부, 근로장려금 실제 수급 여부 및 수급연월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임금근로자의 경우 반기 지급 대상자이므로 응답가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있는 경우와 임금근로자만 있는 가구로 구분하였다. 수급연월에 대해 질문한 것은, 응답자가 받은 근로장려금이 어떤 해의 경제활동에 대한 것

인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재확인하기 위함이다. 또한 EITC를 신청하였지만 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2017년 귀속분 또는 그 이전에 대해서는 신청 경험 유무만을 조사하였다.

여섯 번째 파트에서는 가구의 소득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였다. EITC의 수급요건 및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각각의 소득에 의해 달라지게 된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구주 및 배우자의 소득, 기타 가구원이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가구주뿐 아니라 모든 가구원의 소득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였다. 특히 EITC 소득요건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조사하였다.

일곱 번째 파트에서는 공적이전 소득 수급 여부를 조사하였다. EITC의 확대 개편의 노동공급 효과는 응답자들이 받고 있는 기타 공적이전 소득의 종류 또는 크기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2019년 기준으로 보훈급여금, 기초연금, 농어업정부보조금,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이전 수급 여부 및 수급총액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파트에서는 가구의 자산을 조사하였다. 2019년 귀속분에 대한 EITC 수급 자격 충족 여부 중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조사문항도 201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EITC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의 재산에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된다. 이에 가구주, 배우자 및 다른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 총금액, 소유한 자동차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구입연도, 제조연도, 구입 당시 가격 등), 전세금 및 금융자산에 대해 조사하였다.

V. 분석 방법

1. 연구목적과 분석 대상

정량분석의 주요대상은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동공급 수준이다. EITC 확대에 따른 '노동공급'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보다 임금근로자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로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배우자의 경우 사업소득 등 비임금근로자 지위를 지니고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가구주가 가구의 주요 경제활동 주체라고 간주하는 만큼 가구의 노동공급 변화에 주요 초점을 맞춘다.

노동공급의 주요 지표로 '경제활동참가율', '근로시간', '월임금',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여부' 등을 활용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통상적으로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 설문조사 대상 중에서 취업 상태에 있는 인원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표로 정의하였다. 구직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실업자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고에서는 간단하게 취업자 여부만을 고려하였다. '근로시간', '월임금',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여부'는 각 연도에 대한 '주요일자리'의 특질에 관한 것이다. 이 세 개의 지표는 각 연도에서 취업자로 활동한 경험이 존재할 때에만 생성될 수 있음에 유의하자. 그렇기 때문에 2018년 대비 2019년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경제활동참가율'은 취업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변화 상태를 검토할 수 있는 반면, 전술한 세 가지 노동공급지표는 2018년과 2019년에 모두 취업 상태에 있었던 가구주(혹은 배우자)에 국한하여 그 변화 수준을 검토할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정량분석을 수행할 때는 2018~2019년 동시 취업한 가구주나 배우자로 표본을 국한하였다.

기본적인 분석대상은 가구주의 노동공급 수준이 2018년 대비 2019년에 변화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2019년 확대·개편된 EITC로 인한 노동공급 효과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잠재적 수급대상'을 정의할 필요가 있었는데, 연구자들은 '가

구 내 총자산' 기준을 이용하였다. 2019년부터 EITC를 수급받을 수 있는 가구 내 총자산 규모의 상한선이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승하였다. 그렇다면 2억원 이하의 총자산 규모를 갖고 있는 가구는 가구주나 배우자의 노동공급 수준에 따라 EITC를 받을 수 있다. 반면 2억원을 초과하되 3억원 미만의 총자산 규모를 갖고 있는 가구는 가구주나 배우자의 노동공급에 상관없이 EITC를 받을 수 없게 된다. EITC 수급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총자산 규모를 임의로 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저소득가구가 그렇게 임의로 자산 규모를 조정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총자산 규모는 일종의 사전적인 가구특질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중차이법에 기반한 처리효과 분석 설정에서, 처리집단을 이러한 총자산 규모가 2억원 이하인 집단으로 정의하고, 처리기간을 2019년을 간주하고 두 변수 간의 상호교차항의 계수는 2019년 확대·개편된 EITC의 노동공급 효과로 간주하였다.

2. 계량 모형

기본적인 계량모형은 다음의 식 (1)과 같다.

$$y_{jt} = \beta^{Policy} I(A_j \leq 2\text{억원}) I(t = 2019) + I(t = 2019) + \delta_j + \epsilon_{jt} \quad \text{식 (1)}$$

여기에서 y_{jt} 는 가구주 혹은 배우자의 노동공급 수준을 나타낸다. 처리집단은 가구의 총자산 규모 A_j 가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로 한정하였다. 처리 기간은 2019년이다. 2018년과 2019년 노동공급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가구의 총개수를 J 라 하면 총관측치는 $2J$ 가 될 것이다. 이중차이법 모형에서 정책효과는 처리집단 더미변수와 처리기간 더미변수의 상호교차항의 계수이며, 식 (1)에서는 β^{Policy} 로 나타낼 수 있다.

가구별 보이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고정효과 모형(δ_j)을 고려하였으며, 회귀분석 시 광역시도 차원의 군집표준오차를 고려하였다.

종속변수 y_{jt} 경제활동참가율(취업 여부) 지표는 1 또는 0의 값을 가지며 이 경우 선형확률모형으로 해석하여 $\beta^{Policy} \times 100\%$ 만큼 취업률이 변화했다고 해석할 것이다. 또한 y_{jt} 는 주요 일자리에서의 주당 근로시간(시간), 월임금(만원), 시간당임금

(만원),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취득 여부 등이 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취득 여부’ 역시 취득 시 1, 미취득 시 0의 값을 가지며, 선형확률모형으로 계수를 해석할 것이다.

노동공급 효과는 가구의 유형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EITC 제도상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구의 형태는 2018~2019년 기간 동일할 수 있으므로 δ_j 에 의해 그 특질이 제거된다. 이 때문에 본고에서는 식 (1)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별로 하위표본을 구성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EITC의 노동공급 효과가 처리집단의 특성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이질적인 처리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식 (2)의 모형을 고려한다.

$$y_{jt} = \beta_0^{Policy} I(A_j \leq 2\text{억원}) I(t=2019) + \beta_1^{Policy} I(A_j \leq 2\text{억원}) I(t=2019) I(j \in \Omega) + I(t=2019) + \delta_j + \epsilon_{jt} \quad \text{식 (2)}$$

식 (2)에서 Ω 는 특정한 특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구 j 가 소득조건상 ‘점증’ 구간에 속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이 경우 점증구간에 속한 가구의 노동공급 효과는 $\beta_0^{Policy} + \beta_1^{Policy}$ 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점증구간에 속하지 않은 다른 가구의 노동공급 효과는 β_0^{Policy} 로 표현할 수 있다.

Ⅵ. 분석 자료

1. 자료 소개 및 변수 구축

본 보고서에서 활용한 분석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닐슨코리아에 의뢰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의 지역별 분포를 참고하여 거주 지역의 공시지가가 3억원 이하인 지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⁶⁾ 지역의 공시지가를 고려한 것은 사전에 자산을 기준으로 근로장려세제의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자산요건의 경우 가구구성이나 근로소득에 비하여 근로장려세제가 개편되었을 때 곧바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⁷⁾

본고에서 통제집단은 근로장려세제 자산요건에 부합하지는 않으나 처치집단 가구의 근처에서 거주하는 경우로 선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 대상을 찾기 위하여 아파트를 방문하였을 때, 방문한 가구가 해당 아파트를 ‘자 가’ 소유하는 경우 자산요건을 만족하여 처치집단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통제집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닐슨코리아를 통하여 100가구를 시범조사한 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상등하다고 먼저 확인하였다. 또한 시범조사 과정에서 설문문항 중 추가적으로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본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해당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다. 최종적으로 시범조사 가구 포함 1,600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료를 수집하였다.⁸⁾

이러한 별도의 설문조사를 수행한 이유 중 하나는 현재 가용한 자료상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재정패널조사의 경우 2019년 자료(조사기준 시점: 2018년) 기준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의 수는 89가구(전체의 1.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패널 조사의 경우 2019년 자료(조사기준 시점: 2018년) 기준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 수

6) 그러므로 본 설문조사의 가구 표본이 전국적으로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

7) 가구구성도 쉽게 바뀌지는 않으나 세대 분리 등을 통하여 행정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8) 시범조사 대상 100가구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변경된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는 총 329가구(전체의 5.2%)로 재정패널조사에 비해 많은 표본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분석하기에 충분한 표본수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1〉 재정패널조사 및 복지패널조사의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 비중
(단위: 가구, %)

구분	가구수	총 조사가구 수 대비 비중
〈재정패널조사〉		
2017(조사기준 시점: 2016년)		
총 조사가구 수	4,790	100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85	1.77
2018(조사기준 시점: 2017년)		
총 조사가구 수	4,770	100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73	1.53
2019 (조사기준 시점: 2018년)		
총 조사가구 수	4,765	100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89	1.87
〈복지패널조사〉		
2017(조사기준 시점: 2016년)		
총 조사가구 수	6,581	100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294	4.47
2018(조사기준 시점: 2017년)		
총 조사가구 수	6,474	100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344	5.31
2019(조사기준 시점: 2018년)		
총 조사가구 수	6,331	100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329	5.20

주: 재정패널조사는 횡단면 가중치, 복지패널조사는 통합표본 가중치 적용
자료: 재정패널조사, 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앞의 두 조사와 달리,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표본수를 가지고 있으나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를 통합하여 수급금액을 조사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구 내 근로소득 및 18세 미만 자녀 존재 여부를 통해 근로장려세제 수급 여부를 간접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자료(조사기준 시점: 2018년)의 경우 총 18,406가구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를 수급한 가구는 총 2,363가구(전체의 12.8%)이다. 근로장려세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존재해야 하므로 이러한 가구로만 한정할 경우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수급가구는 총 1,993가구(전체의 10.8%)이며, 이는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의 상한이 된다. 하지만 해당 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세제는 받지 않고 자녀장려세제만을 수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제외할 경우 1,106가구(전체의 5.93%)가 되며 이는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의 하한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할 때 2017년 자료(조사기준 시점: 2016년)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1,778가구(전체의 9.6%)와 1,006가구(전체의 5.4%)이며, 2018년(조사기준 시점: 2017년)은 각각 1,924가구(전체의 10.3%)와 1,106가구(전체의 5.9%)이다. 즉,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충분한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 표본이 존재하지만, 해당 가구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설문조사를 수행해 구축한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VI-2〉 가계금융복지조사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 추정치

(단위: 가구, %)

구분	가구수	총 조사가구 수 대비 비중
2017 가구마스터(조사기준 시점: 2016년)		
총 조사가구 수	18,497	100.0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수급가구	2,040	11.03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13,301	71.91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수급가구	1,778	9.61
자녀가 있는 경우	772	4.17
자녀가 없는 경우	1,006	5.44
2018 가구마스터(조사기준 시점: 2017년)		
총 조사가구 수	18,640	100.0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수급가구	2,256	12.10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13,349	71.61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수급가구	1,924	10.32
자녀가 있는 경우	818	4.39
자녀가 없는 경우	1,106	5.93
2019 가구마스터(조사기준 시점: 2018년)		
총 조사가구 수	18,406	100.0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수급가구	2,363	12.84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13,260	72.04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수급가구	1,993	10.83
자녀가 있는 경우	731	3.97
자녀가 없는 경우	1,262	6.86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기초통계량

본 소절에서는 설문조사 응답결과에 대해 소개한다.

먼저 가구, 가구원 특성, 사회경제적 변수 등 기초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VI-3>에 제시되었다. EITC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가구원 근로소득, 자산 보유 현황 등이 우리나라 전체 모집단에 비해 낮은 경향이 관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응답 가구의 58.2%는 소유한 부동산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공시지가 기준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가구는 0.2%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원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2천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가구가 29.9%인 반면 5천만원 이상은 11.9%였다. 학력은 고졸이 4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대졸 25.4%, 중졸 13.3%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1.5%는 취업자, 5.3%는 실업자, 33.3%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조사되었다. 또한 취업자 중 59.3%는 상용근로자(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32.4%는 임시근로자(근로계약기간 1개월~1년), 7.7%는 일용근로자(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로 조사되었다.⁹⁾ EITC 신청 및 수급 가구의 비중은 각각 54.0%와 48.1%로 나타났다. 이는 본 설문조사가 EITC 수급·비수급가구의 표본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표 VI-3> 주요 문항별 응답 비율

(단위: %)

성별	남		여			
		47.0			53.0	
연령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5.9	9.8	15.4	22.9	17.3	8.8
학력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7.9	8.3	13.3	44.8	25.4	0.3
권역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	제주
	44.1	11.3	27.0	12.5	3.8	1.4

9) EITC 확대 개편에 반응하여 노동공급을 변경할 여지가 적은 고용주 및 자영업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표 VI-3〉의 계속

혼인상태	미혼	결혼/동거	이혼	사별	별거			
	32.8	53.3	6.2	7.3	0.3			
가구원 수	1인	2인	3~4인	5인 이상				
	27.1	37.5	32.4	2.9				
주거점유 형태	자가	전세	월세	전월세	무상임대	공공임대	기타	
	38.9	27.6	10.3	4.8	1.3	16.9	0.3	
소유 부동산 공시지가	소유 부동산 없음	1억원 미만	1억~1억 4천만원	1억 4천만~2억원	2억~2억 5천만원	2억 5천만~3억원	3억~4억원	
	58.2	13.8	12.8	12.9	1.0	1.2	0.2	
차량 보유 대수	없음	1대	2대	3대				
	48.88	46.88	4.2	0.1				
예·적금액	예적금 없음	200만원 미만	200~500만원	500~1천만원	1천~2천만원	2천~4천만원	4천만원 이상	
	10.4	6.5	19.9	21.1	20.9	15.8	5.3	
저축성 연금성 보험 금액	없음	200만원 미만	200~500만원	500~1천만원	1천~1,500만원	1,500~2천만원	2천만원 이상	모름/거절
	72.4	1.2	4.1	7.1	7.6	3.2	4.3	0.1
가구원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61.5		5.3		33.3			
가구원 종사상 지위 (취업자인 경우)	상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개월~1년)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59.3	32.4	7.7	0.3	0.2			
가구원 근로소득	2천만원 미만	2~3천만원	3~4천만원	4~5천만원	5천만원 이상			
	29.9	30.6	19.8	7.9	11.9			
기초연금 수급 여부	수급			비수급				
	19.8			80.3				
ETC 신청 여부	신청			비신청				
	54.0			46.0				
ETC 수급 여부	수급			비수급				
	48.1			51.9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EITC와 관련된 주요 응답결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논의한다. 먼저, EITC 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1%는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43.7%) 또는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16.4%)라고 답하였다. 이는 표본의 약 절반 정도가 EITC를 수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된 결과이며, 실제로 EITC 신청 또는 수급한 경험이 있는 가구에서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공시지가 구간별로 EITC 제도 인지 정도를 살펴보면, 공시지가 1.5억~2억원 구간까지는 공시지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EITC 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가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으나 공시지가 2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다시 EITC 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패턴은 가구원 근로소득으로 구분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근로소득 4천~5천만원 구간까지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EITC 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가 하락하다가 근로소득 5천만원 이상 구간에서 다시 소폭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자산이 적거나 근로소득이 낮은 가구들이 EITC 수급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은 경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표 VI-4〉 EITC에 대한 인지 여부 응답 결과

(단위: %)

		근로장려금 인지 정도			
구분		들어본 적 없음	들어본 적은 있었으나, 내용은 잘 몰랐음	들어본 적도 있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었음
공시지가	5천만원 미만	10.4	22.7	44.8	22.1
	5천만~1억원	10.8	24.4	42.2	22.6
	1억~1억 5천만원	11.5	31.4	44.9	12.1
	1억 5천만~2억원	18.3	31.7	39.2	10.8
	2억원 이상	9.4	28.3	48.4	13.9
	모름/거절	16.7	16.7	33.3	33.3
가구원 근로소득	2천만원 미만	12.6	19.7	46.2	21.5
	2천만~3천만원	12.1	26.0	44.6	17.4
	3천만~4천만원	10.8	32.0	44.0	13.3
	4천만~5천만원	11.0	44.9	31.5	12.6
	5천만원 이상	12.6	36.3	42.6	8.4

〈표 VI-4〉의 계속

		근로장려금 인지정도			
구분		들어본 적 없었음	들어본 적은 있었으나, 내용은 잘 몰랐음	들어본 적도 있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었음
EITC 신청 여부	신청가구	0.8	11.3	60.8	27.1
	비신청가구	25.0	47.6	23.6	3.8
EITC 수급 여부	수급가구	0.9	10.8	59.9	28.3
	비수급가구	22.1	43.9	28.6	5.3
전체		11.9	28.0	43.7	16.4

주: 2019년 상반기 기준 응답 결과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응답자들이 2019년 상반기 당시 EITC 신청자격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소득요건, 즉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61.1%로 나타났다. EITC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와 마찬가지로 EITC 신청 혹은 수급 경험자, 자산 및 소득 수준이 낮은 그룹에서 소득요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비중이 높은 경향으로 관측되었다. 반면 가구요건 및 재산요건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1.5%와 31.7%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은 2019년 이후 단독가구에 대한 나이 제한이 폐지된 사실, 재산 규모가 1억 4천만~2억원일 시 근로장려금이 50% 감액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EITC 신청을 위해서는 부양자녀, 총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한 응답자 비중도 40.5%로, 과반수 이상은 이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5〉 EITC 신청요건 인지 여부 응답 결과

(단위: %)

근로장려금 소득, 가구, 재산요건 및 신청자격 인지 여부					
구분		소득요건	가구요건	재산요건	신청자격 인지 여부 (부양자녀, 총소득, 재산 기준 모두 충족 필요)
공시지가	5천만원 미만	69.5	46.1	44.8	48.7
	5천만~1억원	64.0	38.7	37.1	42.4
	1억~1억 5천만원	59.9	25.5	28.9	41.9
	1억 5천만~2억원	50.4	24.6	22.9	32.5
	2억원 이상	62.8	26.0	26.9	36.3
	모름/거절	83.3	50.0	16.7	33.3
가구원 근로소득	2천만원 미만	67.4	35.1	32.4	39.7
	2천만~3천만원	62.4	35.0	36.6	46.0
	3천만~4천만원	57.6	29.7	29.7	39.9
	4천만~5천만원	44.9	18.9	20.5	30.7
	5천만원 이상	58.9	24.7	27.9	35.8
EITC 신청 여부	신청가구	83.6	46.5	47.7	59.4
	비신청가구	34.8	13.9	12.9	18.3
EITC 수급 여부	수급가구	83.4	46.2	48.0	59.0
	비수급가구	40.6	17.9	16.6	23.3
전체		61.1	31.5	31.7	40.5

주: 2019년 상반기 기준 응답 결과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근로장려금 지원상한액이 점점 올라가는 점증구간, 유지구간, 점점 줄어드는 감소구간의 존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경향은 공시지가가 높은(1억원 이상) 가구, 근로소득이 높은(4천만원 이상) 가구에서 더 뚜렷하게 관측되었다. 심지어 EITC 신청 혹은 수급 경험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도 지원상한액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비신청 혹은 비수급 가구에 비해서는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그 비중은 23% 내외에 그쳤다. 또한 점증구간에 속하는 경우 소득이 증가할 때 근로장려금도 증가한다는 사실에 대해

서 응답자의 14.4%만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EITC 신청 또는 수급 경험자의 경우에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21% 내외에 그쳤다.

〈표 VI-6〉 EITC 지급액 산정기준 인지 여부 응답 결과

(단위: %)

EITC 지원상한액 산정기준에 대한 인지 여부			
구분		근로장려금 지원상한액 점증, 유지, 감소구간 존재 인지 여부	근로장려금 점증구간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이 증가하는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
공시지가	5천만원 미만	18.8	20.1
	5천만~1억원	20.5	20.3
	1억~1억 5천만원	12.1	10.9
	1억 5천만~2억원	12.5	11.3
	2억원 이상	11.2	9.0
	모름/거절	16.7	0.0
가구원 근로소득	2천만원 미만	15.1	13.4
	2천만~3천만원	16.6	16.6
	3천만~4천만원	16.5	15.2
	4천만~5천만원	11.0	11.0
	5천만원 이상	13.2	12.1
EITC 신청 여부	신청가구	22.7	21.2
	비신청가구	6.5	6.4
EITC 수급 여부	수급가구	23.1	20.8
	비수급가구	7.9	8.4
전체		15.3	14.4

주: 2019년 상반기 기준 응답 결과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EITC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 인식 수준은 높지 않다고 평가되며, EITC 제도의 세부적인 설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EITC를 신청 또는 수급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는 유의미하게 높은 인지 비율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제도 변화(가구요건 및 재산요건 변화)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비중은 낮았다. 특히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점증, 유지, 감소구간이 존재하고 점증구간에 속하는 경우 소득이 증가할 때 근로장려금도 증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가구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조사 결과만을 놓고 볼 때, EITC 확대 개편에 반응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내적 한계 측면에서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실증분석 부분에서 엄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2018년 및 2019년의 EITC 신청 및 수급 가구의 비중을 제시하였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2019년 EITC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였으므로 전체 표본을 ① 임금근로자만 있는 가구와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있는 가구로 구분하여 EITC 신청 및 수급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임금근로자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상반기 귀속 소득분에 대한 EITC 신청 가구의 비중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EITC 제도 확대 개편이 2018년 9월에 발표되고 2019년에 지급한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바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2019년 하반기 귀속 소득분에 대한 EITC 신청 가구 비중은 24.4%로, 2018년 귀속(42.8%)과 2019년 상반기 귀속(41.6%)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2019년 상반기와 하반기 귀속 소득분에 대해서는 EITC 제도상 변화가 없었으므로, 이는 응답자들이 2019년 귀속 소득분부터 최초로 도입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 자신이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의 귀속 소득분을 정확히 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¹⁰⁾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비중은 재산 및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공시지가로 측정된 재산 수준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모두 2억원 이상 구간에서 1억 5천만~2억원 구간에 비해 EITC 신청 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가구의 85% 이상이 실제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EITC 제도 설계상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요건을 미충족하여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응답 결과가 도출된 원인 중 한 가지 가능성은 정부에서 EITC를 산정할 때 가구를 정의하는 방식과 설문조사 응답자가 인식하고 있는 가구의 개념이 불일치하는 경우이

10) 2019년 하반기 귀속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0년 3월 1일~31일이었으며, 2020년 6월 10일부터 지급되었다.

다. 즉 EITC 산정 시에는 두 개의 가구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는 두 가구를 하나의 가구로 인식하고 재산 수준을 응답하였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4천만원 이상인 가구가 EITC를 신청하고 실제로 수급한 경우도 이러한 가구 기준의 차이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¹¹⁾ 다만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EITC 신청 가구 중 실제 수급 가구 비중이 하락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 소득이 높은 가구 중 상당수는 국세청 심사과정에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다.

EITC 신청 가구 중 실제 수급한 비중의 경우 2018년(87.6%), 2019년 상반기(88.3%), 2019년 하반기(86.0%) 귀속 소득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VI-7〉 EITC 신청 및 수급 가구 비중 변화(임금근로자)

(단위: %)

구분		응답 가구 중 EITC 신청 비중			EITC 신청 가구 중 수급 비중		
		2018년 귀속 소득분	2019년 상반기 귀속 소득분	2019년 하반기 귀속 소득분	2018년 귀속 소득분	2019년 상반기 귀속 소득분	2019년 하반기 귀속 소득분
공시 지가	5천만원 미만	52.4	53.8	29.4	82.7	87.0	83.3
	5천만~1억원	48.0	45.0	26.8	92.0	92.5	84.0
	1억~1억5천만원	41.2	40.3	21.9	90.1	88.3	91.2
	1억 5천만~2억원	30.9	30.5	19.7	73.9	80.9	79.5
	2억원 이상	41.2	39.2	27.0	85.7	86.3	87.3
	모름/거절	50.0	83.3	16.7	100.0	80.0	100.0
가구원 근로소득	2천만원 미만	54.3	57.8	29.6	96.7	93.9	95.5
	2천만~3천만원	48.8	48.1	32.2	88.8	91.4	90.5
	3천만~4천만원	36.9	33.4	19.9	80.2	83.3	68.4
	4천만~5천만원	23.9	15.4	8.5	75.0	61.1	70.0
	5천만원 이상	19.2	12.8	8.7	45.5	36.4	33.3
전체		42.8	41.6	24.4	87.6	88.3	86.0

주: 2019년 상반기 기준 응답 결과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1) 현재 EITC를 수급하기 위한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이다.

마지막으로 가구 내에 특수형태근로자가 존재하여 근로장려금 받기 지급대상이 아닌 가구에 대해서 2018년과 2019년의 EITC 신청 및 수급 비중을 비교하였다. 임금근로자만 있는 가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2018년과 2019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EITC 신청 가구 비중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2018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서는 응답 가구의 47.8%, 2019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서는 49.6%가 EITC를 신청하였다고 답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8년 귀속 소득분과 2019년 귀속 소득분 모두 확대 개편된 제도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예측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EITC 신청 가구 중 수급 가구의 비중은 2018년 귀속 소득분 85.2%, 2019년 귀속 소득분 89.3%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역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가구의 재산 및 소득 수준에 따라 EITC 신청 비중을 살펴본 결과, 임금근로자 가구와 마찬가지로 재산 및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EITC를 신청한 가구의 비중이 낮아졌지만 공시지가 2억원 이상 구간 및 근로소득 5천만원 이상 구간에서의 EITC 신청 가구 비중은 증가하였다. 다만 임금근로자 가구와 달리 재산 또는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가 EITC를 신청한 경우에도 실제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비중이 높은 수준(공시지가 2억원 이상 77.8%와 80.0%, 근로소득 5천만원 이상 71.4%와 83.3%)을 보였다는 점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특수형태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국세청에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실제로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함에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재산 요건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수급 확률이 높은 결과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자 가구가 있는 가구의 표본수가 113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산구간 또는 소득 구간별로 구분한 응답결과의 해석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VI-8〉 EITC 신청 및 수급 가구 비중 변화(가구 내 특수형태근로자 있는 경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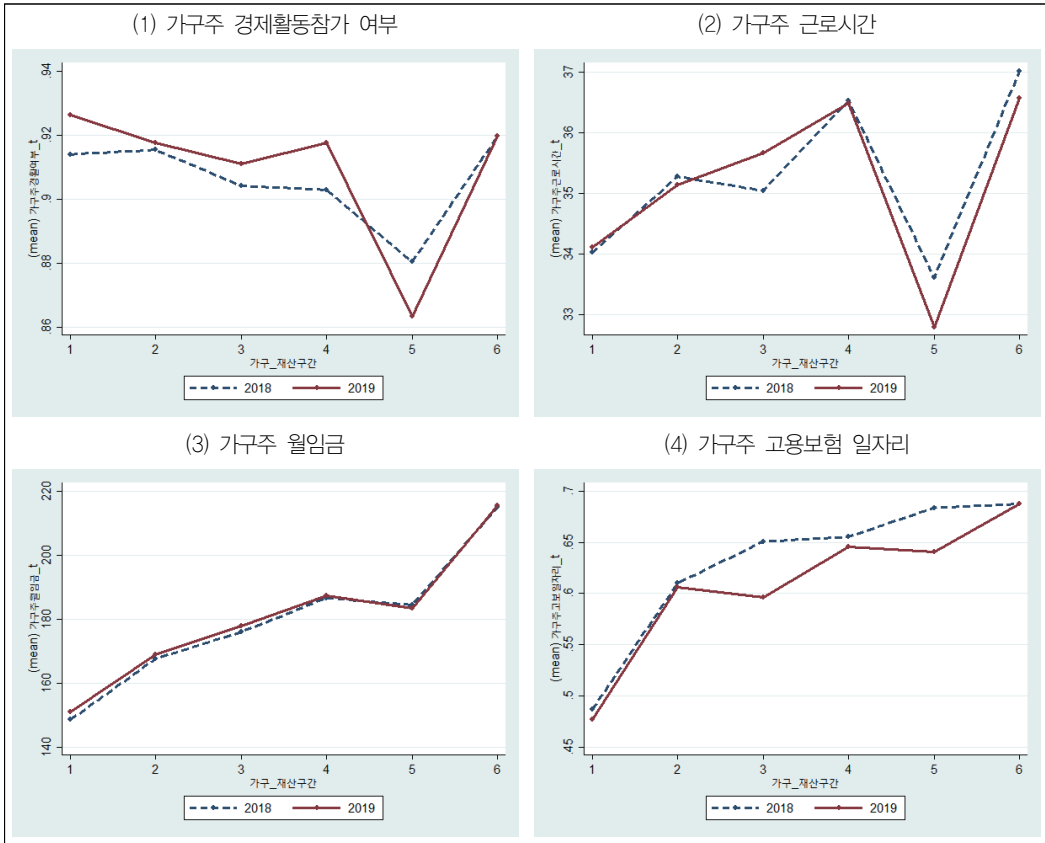
구분		응답 가구 중 EITC 신청 비중		EITC 신청 가구 중 수급 비중	
		2018년 귀속 소득분	2019년 귀속 소득분	2018년 귀속 소득분	2019년 귀속 소득분
공시 지가	5천만원 미만	90.9	90.9	100.0	100.0
	5천만~1억원	55.3	55.3	95.2	100.0
	1억~1억 5천만원	32.1	35.7	66.7	80.0
	1억 5천만~2억원	29.4	29.4	60.0	60.0
	2억원 이상	47.4	52.6	77.8	80.0
가구원 근로소득	2천만원 미만	62.5	79.2	93.3	94.7
	2천만~3천만원	43.8	40.6	85.7	92.3
	3천만~4천만원	55.2	55.2	87.5	87.5
	4천만~5천만원	20.0	20.0	50.0	50.0
	5천만원 이상	38.9	33.3	71.4	83.3
전체		47.8	49.6	85.2	89.3

주: 2019년 상반기 기준 응답 결과
자료: 설문조사를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노동공급 관련 데이터패턴

본 절에서는 노동공급과 관련된 데이터패턴을 살펴보기로 한다. 노동공급 지표는 가구주나 배우자의 경제활동참가 여부, 근로시간, 월임금, 고용보험 일자리 여부 등으로 정의한다. [그림 VI-1]~[그림 VI-5]는 분석표본을 가구의 총재산금액의 구간별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 평균노동공급 수준을 보여준다. 2019년 기준 가구의 총재산금액이 3억원 이하인 가구로 표본을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가구의 총재산금액의 구간은 5천만원 이하(구간 1),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구간 2), 1억원 초과~1억 4천만원 이하(구간 3), 1억 4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구간 4), 2억원 초과~2억 5천만원 이하(구간 5), 2억 5천만원 초과~3억원(구간 6)으로 정의하였다. 구간 1~구간 4에 해당하는 가구가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EITC 재산요건을 만족한다. 이하의 모든 그림에서 실선은 2019년 노동공급 지표를, 점선은 2018년 노동공급 지표를 나타낸다.

[그림 VI-1] 가구 총재산금액 구간별 가구의 노동공급: 2018년 vs 2019년
(단위: %, 시간, 만원, 비율)



주: 1. 각 그림의 x축은 가구의 총재산금액별로 구분한 것임
2. 구간1: 5천만원 이하, 구간2: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구간3: 1억원 초과~1억 4천만원 이하, 구간4: 1억 4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5: 2억원 초과~2억 5천만원 이하, 구간6: 2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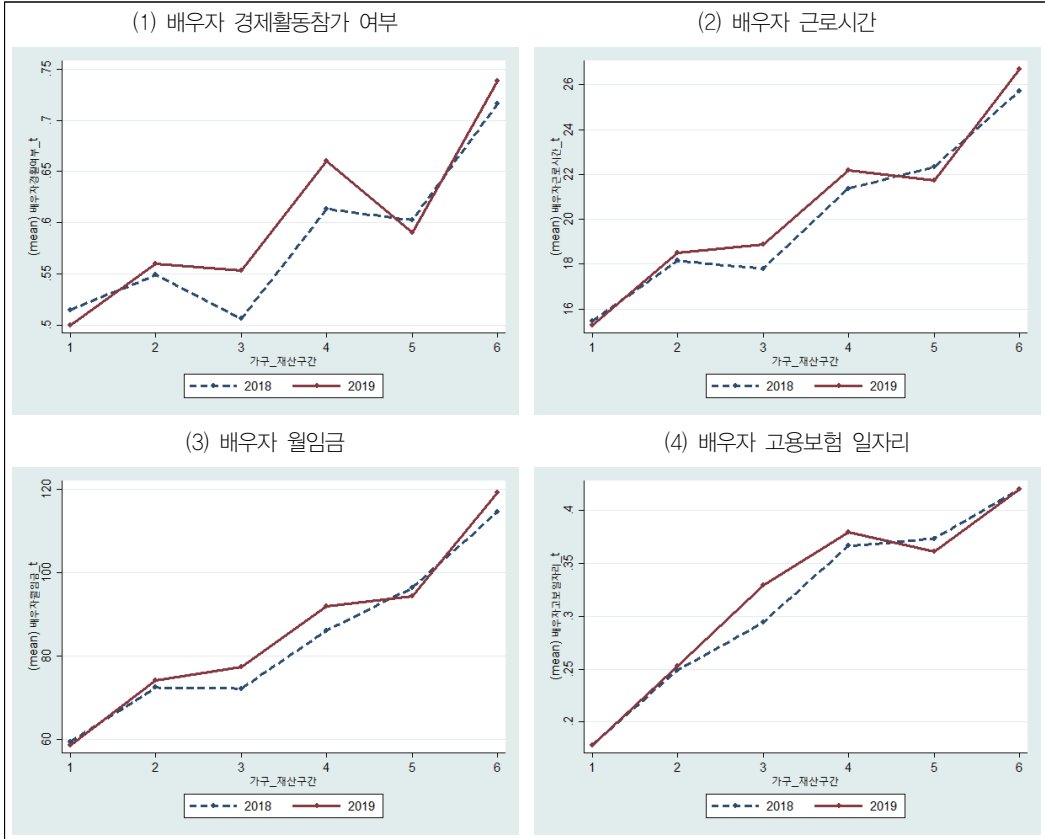
자료: KIPF 자체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먼저 [그림 VI-1]에서는 가구 총재산금액 구간별 가구의 노동공급 수준을 보여 준다. EITC 재산요건을 만족하는 가구(재산구간 1~4)의 경우 2018년 대비 2019년에 가구주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확률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재산구간 5, 6의 경우 가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8년 대비 2019년 더 낮다. 가구주의 근로시간 역시 대체로 2018년 대비 2019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¹²⁾ 근로시간의 증가 폭은 ‘재산구간 3’에서 두드러진다. 가구주의 월임금 수준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12) 이후 회귀식에서는 근로시간·월임금·고용보험 일자리 분석 시 2018~2019년 모두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그림에서는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인원도 포함하여 평균치를 계산하였다.

미세하게나마 EITC 재산요건을 만족하는 구간에서 2018년 대비 2019년에 월임금 수준이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취득확률은 2018년 대비 2019년에 현저하게 낮아졌으며, 그러한 데이터 패턴은 가구의 총재산금액이 높을수록 더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VI-2] 가구 총재산금액 구간별 배우자의 노동공급: 2018년 vs 2019년
(단위: %, 시간, 만원, 비율)



주: 1. 각 그림의 x축은 가구의 총재산금액별로 구분한 것임
 2. 구간1: 5천만원 이하, 구간2: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구간3: 1억원 초과~1억 4천만원 이하, 구간4: 1억 4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5: 2억원 초과~2억 5천만원 이하, 구간6: 2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 배우자가 존재하는 가구에 한정함

자료: KIPF 자체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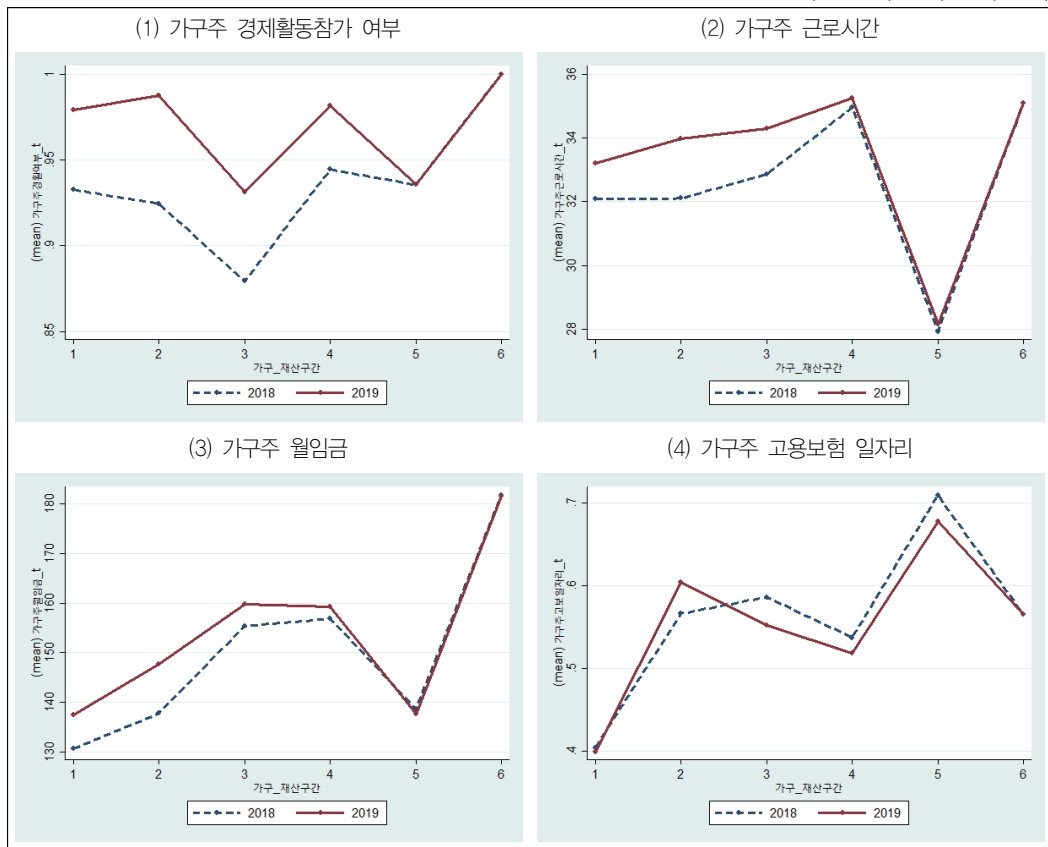
[그림 VI-2]에서는 배우자의 노동공급 수준을 보여준다. 이때는 배우자가 존재하는 가구에 한정하였음을 밝힌다. 배우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8년 대비 2019년에 증가하였고, 이러한 패턴은 재산구간 2~4에서 나타난다. 즉 EITC 재산요건을

만족하는 구간이지만 최하위 재산요건 구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패턴은 배우자의 다른 노동공급 지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배우자의 근로시간과 월임금, 고용보험 일자리 확률이 2018년 대비 2019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모두 재산구간 2~4에서만 나타난다.

[그림 VI-3]~[그림 VI-5]에서는 가구의 유형별(각각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가구주의 노동공급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VI-3] 단독가구 유형 가구주의 노동공급: 2018년 vs 2019년

(단위: %, 시간, 만원, 비율)



- 주: 1. 각 그림의 x축은 가구의 총재산금액별로 구분한 것임
- 2. 구간1: 5천만원 이하, 구간2: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구간3: 1억원 초과~1억 4천만원 이하, 구간4: 1억 4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5: 2억원 초과~2억 5천만원 이하, 구간6: 2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 단독가구 유형에 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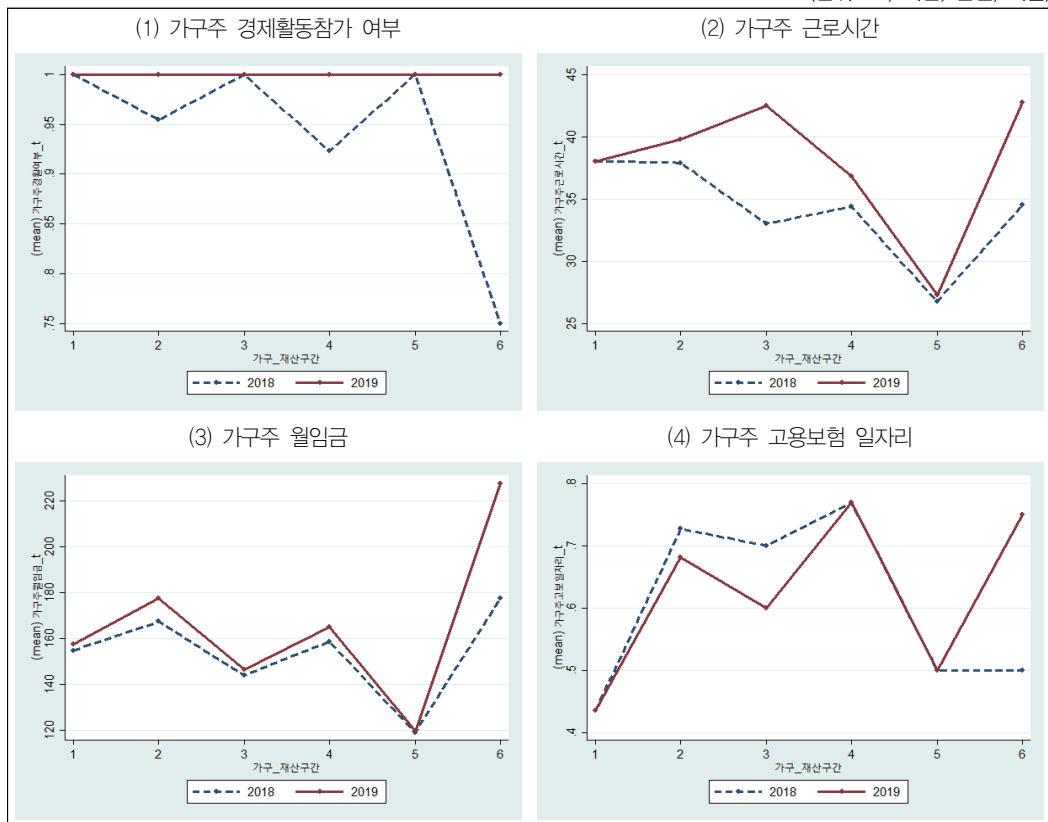
자료: KIPF 자체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VI-3]은 단독가구 가구주의 노동공급을 보여주는데, 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EITC 재산요건을 만족하는 구간 1~4에서 모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근로시간 역시 증가하는데, EITC 재산요건을 만족하는 구간 중에서도 1~3 구간에서만 나타난다. 재산구간 4~6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재산구간 1~3에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근로시간이 늘어났으므로 단독가구 가구주의 월임금 역시 증가할 것이고, [그림 VI-3](3)에서는 그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단독가구의 가구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자리를 취득할 확률은 재산구간 2에서 다소 늘어나지만, 모든 구간에서 2018년 대비 2019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VI-4] 홀벌이가구 유형 가구주의 노동공급: 2018년 vs 2019년

(단위: %, 시간, 만원, 비율)



주: 1. 각 그림의 x축은 가구의 총재산금액별로 구분한 것임

2. 구간1: 5천만원 이하, 구간2: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구간3: 1억원 초과~1억 4천만원 이하, 구간4: 1억 4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5: 2억원 초과~2억 5천만원 이하, 구간6: 2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 홀벌이가구 유형에 한정함

자료: KIPF 자체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VI-4]에서는 홑벌이가구 가구주의 노동공급을 보여주고 있다. 홑벌이가구의 가구주는 대체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당히 높다. KIPF 자체설문조사에 의하여 홑벌이가구의 가구주는 2019년 거의 100% 경제활동 참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4(1)]에 따르면 이는 재산구간 1, 3, 5에서는 2018년, 2019년 모두 100%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고, 재산구간 2, 4에서는 2018년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90~95%로 나타나 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9년에 상대적으로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홑벌이가구 유형의 가구주 경제활동참가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반면, 주당 근로시간은 재산구간 3에서 2018년 대비 2019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ITC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재산구간 6에서도 가구주의 근로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구주의 월임금 패턴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림 VI-5] 홑벌이가구 유형 가구주의 노동공급: 2018년 vs 2019년

(단위: %, 시간, 만원, 비율)



주: 1. 각 그림의 x축은 가구의 총재산금액별로 구분한 것임

2. 구간1: 5천만원 이하, 구간2: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구간3: 1억원 초과~1억 4천만원 이하, 구간4: 1억 4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5: 2억원 초과~2억 5천만원 이하, 구간6: 2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 홑벌이가구 유형에 한정함

자료: KIPF 자체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전반적으로 2018년 대비 2019년 가구주의 월임금이 증가하였으나 EITC 재산요건 미충족 구간인 재산요건 6에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홑벌이가구 가구주의 근로시간이나 월임금 증가가 2019년 개편된 EITC 제도와 크게 관련성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홑벌이가구의 가구주가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를 취득하는 확률이 2018년 대비 2019년에 EITC 재산요건 만족 구간에서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그림 VI-5]에서는 맞벌이가구 유형 가구주의 노동공급 수준을 보여준다. 단독가구나 홑벌이가구 유형과 달리 맞벌이가구 유형의 경우, 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8년 대비 2019년에 오히려 낮아졌다. 이는 거의 모든 재산구간에서 나타나는데 그 하락 폭이 EITC 재산요건 만족하는 구간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다. 가구주의 근로시간 역시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가구주의 월임금은 재산구간 1~3에서 다소 낮아지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하지는 않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취득 확률은 2018년 대비 2019년에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패턴은 단독가구나 홑벌이가구 사례와 일치한다.

VII. 분석 결과

1. 기본 모형 분석 결과

앞서 보인 노동공급과 관련된 데이터 패턴은 연도별 경기상황의 변화, 가구나 가구원의 특질 변화 등에 의한 종합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2019년에 확대·개편된 EITC로 인한 노동공급 효과라고 간주하기 어렵다. EITC 제도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이중차이법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대의 경우 2019년에 새롭게 EITC 적용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가구의 구성 등이 30대 이상 가구와 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요 분석 결과에서는 제외하였다. 대신 이후 20대 가구주만 별도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2019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총자산 규모가 최대 2억원인 경우까지만 지급되므로 분석표본에서 가구 총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는 분석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 총자산 규모가 2억원 이하인 경우가 잠재적인 EITC 수급대상이라고 가정하여, 이 집단을 가리키는 더미변수와 2019년을 가리키는 더미변수 간의 교차항의 계수 추정량을 ‘정책효과’로 정의하였다.

먼저 주요 결과로서 <표 VII-1>을 살펴보자. <표 VII-1>은 가구주의 노동공급 효과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가구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를 고려하였을 때, 가구주의 노동공급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활동참가율, 근로시간, 주된 일자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확률 등의 계수는 양(+)의 값을, 월평균임금이나 주된 일자리 시간당임금은 음(-)의 값을 갖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VII-1〉 가구주의 노동공급 효과: 모든 가구 유형

	(1) 경제활동 참가 여부	(2) 주된 일자리 주당근로시간	(3) 주된 일자리 월평균임금	(4) 주된 일자리 시간당임금	(5) 주된 일자리 고용보험가입
정책효과	0.0170 (0.0135)	0.0190 (0.114)	-0.813 (1.367)	-0.00558 (0.00789)	0.00281 (0.00920)
관측치수	2,874	2,548	2,548	2,548	2,548
R^2	0.001	0.000	0.015	0.005	0.008
집단수	1,437	1,274	1,274	1,274	1,274

- 주: 1. 모든 회귀식에서 가구 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함. 광역시도별 군집표준오차를 고려함
 2. (2)~(5)의 경우,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 가구주에 한정함
 3. '정책효과'란 2019년 기준 재산요건을 만족한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2019년 이후를 가리키는 더미변수 간의 교차항의 계수를 의미
 4. 분석표본은 2019년 기준 30세 이상 및 가구의 재산총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
 5. () 안의 수치는 표준 오차를 의미.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도 10%, 5%, 1% 수준을 의미함

자료: KIPF 자체 설문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VII-2〉에서는 가구 유형별로 별도의 이중차이법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준다. 첫 번째 패널에서는 단독가구 유형의 가구주 노동공급 효과를 보여준다. 단독가구 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 주된 일자리에서의 주당근로시간, 주된 일자리에서의 월평균임금은 모두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EITC 개편 결과, EITC 재산요건을 만족하는 가구가 노동공급을 변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단독가구 가구주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시간당임금이나 고용보험 가입확률의 계수는 양(+의 값을 지니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게 나타났다.

〈표 VII-2〉의 두 번째 패널은 홑벌이가구 유형, 세 번째 패널은 맞벌이가구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주된 일자리에서의 시간당임금(임금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나머지 노동공급 변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그 어떠한 노동공급 지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계수의 부호만 살펴보면, 맞벌이가구 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월임금, 시간당임금은 음(-)의 값을, 주된 일자리에서의 주당근로시간과 고용보험 가입확률은 양(+의 값을 갖는다.

〈표 VII-2〉 가구주의 노동공급 효과: 가구 유형별

단독가구 유형					
	(1) 경제활동 참가 여부	(2) 주된 일자리 주당근로시간	(3) 주된 일자리 월평균임금	(4) 주된 일자리 시간당임금	(5) 주된 일자리 고용보험가입
정책효과	0.0517*** (0.0120)	1.187** (0.418)	7.739*** (1.752)	0.00473 (0.0186)	0.0228 (0.0207)
관측치수	1,036	1,036	1,036	986	1,036
R^2	0.034	0.020	0.028	0.000	0.001
집단수	518	518	518	511	518
출별이가구 유형					
	(1) 경제활동 참가 여부	(2) 주된 일자리 주당근로시간	(3) 주된 일자리 월평균임금	(4) 주된 일자리 시간당임금	(5) 주된 일자리 고용보험가입
정책효과	-0.0539 (0.0842)	-0.598 (3.658)	-11.32 (18.25)	0.0137* (0.00745)	-0.113 (0.0826)
관측치수	160	160	160	157	160
R^2	0.047	0.039	0.068	0.003	0.047
집단수	80	80	80	80	80
맞벌이가구 유형					
	(1) 경제활동 참가 여부	(2) 주된 일자리 주당근로시간	(3) 주된 일자리 월평균임금	(4) 주된 일자리 시간당임금	(5) 주된 일자리 고용보험가입
정책효과	-0.00526 (0.0129)	0.0900 (0.437)	-1.180 (3.176)	-0.00645 (0.0130)	0.00701 (0.0181)
관측치수	1,678	1,678	1,678	1,479	1,678
R^2	0.012	0.018	0.003	0.025	0.014
집단수	839	839	839	757	839

주: 1. 모든 회귀식에서 가구 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함. 광역시도별 군집표준오차를 고려함
 2. (2)~(5)의 경우,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 가구주에 한정함
 3. '정책효과'란 2019년 기준 재산요건을 만족한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2019년 이후를 가리키는 더미변수 간의 교차항의 계수를 의미
 4. 분석표본은 2019년 기준 30세 이상 및 가구의 재산총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
 5. () 안의 수치는 표준 오차를 의미.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도 10%, 5%, 1% 수준을 의미함

자료: KIPF 자체 설문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VII-3〉에서는 배우자의 노동공급 효과를 보여준다. 이 경우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로만 분석표본을 한정하였고, 그중에서도 맞벌이가구 유형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배우자의 노동공급 지표의 계수는 모두 양(+)의 값이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VII-4〉에서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동공급을 결합한 값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¹³⁾ 예를 들어 부부의 경제활동참가 여부 변수는 가구주나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1의 값을, 어느 누구도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부부의 근로시간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가구주와 배우자의 근로시간을 합한 값이다.¹⁴⁾ 〈표 VII-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부의 노동공급 지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다.

〈표 VII-3〉 배우자의 노동공급 효과: 맞벌이가구 유형의 경우

	(1) 경제활동 참가 여부	(2) 주된 일자리 주당근로시간	(3) 주된 일자리 월평균임금	(4) 주된 일자리 시간당임금	(5) 주된 일자리 고용보험가입
정책효과	0.00718 (0.0197)	0.150 (0.815)	1.126 (3.188)	0.00373 (0.0169)	0.0150 (0.0145)
관측치수	1,678	1,678	1,678	1,003	1,678
R^2	0.003	0.002	0.005	0.005	0.002
집단수	839	839	839	526	839

주: 1. 모든 회귀식에서 가구 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함. 광역시도별 군집표준오차를 고려함

2. (2)~(5)의 경우,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 가구주에 한정함

3. '정책효과'란 2019년 기준 재산요건을 만족한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2019년 이후를 가리키는 더미변수 간의 교차항의 계수를 의미

4. 분석표본은 2019년 기준 30세 이상 및 가구의 재산총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

5. 배우자가 존재하는 가구에 한정함

6. () 안의 수치는 표준 오차를 의미.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도 10%, 5%, 1% 수준을 의미함

자료: KIPF 자체 설문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13)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존재하는 맞벌이가구 표본에 한정하였다.

14) 이때 서로 다른 시기에 배우자와 가구주가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없다고 단순하게 가정하였다.

〈표 VII-4〉 부부의 노동공급 효과: 맞벌이가구 유형의 경우

	(1) 경제활동 참가 여부	(2) 주된 일자리 주당근로시간	(3) 주된 일자리 월평균임금	(4) 주된 일자리 시간당임금	(5) 주된 일자리 고용보험가입
정책효과	-0.00805 (0.0152)	0.240 (0.960)	-0.0544 (4.918)	-0.0137 (0.00940)	-0.00592 (0.0233)
관측치수	1,678	1,678	1,678	1,663	1,678
R^2	0.013	0.004	0.000	0.014	0.001
집단수	839	839	839	837	839

- 주: 1. 모든 회귀식에서 가구 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함. 광역시도별 군집표준오차를 고려함
 2. (2)~(5)의 경우,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 가구주에 한정함
 3. '정책효과'란 2019년 기준 재산요건을 만족한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2019년 이후를 가리키는 더미변수 간의 교차항의 계수를 의미
 4. 분석표본은 2019년 기준 30세 이상 및 가구의 재산총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
 5. 배우자가 존재하는 가구에 한정함
 6. () 안의 수치는 표준 오차를 의미.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도 10%, 5%, 1% 수준을 의미함

자료: KIPF 자체 설문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소득구간별 노동공급 효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액수가 점증, 평탄, 점감에 따라 조정된다. 특히 총급여액 등이 점증구간에 속하는 경우, 노동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다. 〈표 VII-5〉에서는 EITC의 정책효과가 점증구간 해당 가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질적 처리효과모형을 통하여 살펴본다.

그렇다면 '점증구간 해당 가구'를 판별하는 변수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2019년 기준의 부부의 총급여액을 이용한 경우, 이는 총급여액이 점증구간에 해당한다는 것이 '사전적인 외생적인 요소'가 아니라 '사후적 내생적 결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2018년 기준 부부의 근로소득 합계액을 점증·평탄·점감구간을 구분하는 기준액으로 거칠게 정의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유형의 경우 2019년 기준 점증구간은 총급여액이 연간 400만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2018년 기준 가구주의 근로소득액(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부부의 근로소득 합계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를 '2018년 기준 (2019년 EITC 제도와 관련한) 사전적 점증구간'에 속하는 가구라 정의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정책효과' 변수¹⁵⁾와 '2018년 기준 사전적 점증구간' 소속 가구 관련 더미변수 간 교차항을 추가

로 삽입하여 분석하였다.

〈표 VII-5〉에서는 모든 가구 유형을 고려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점증구간에 속하는 가구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구주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정책효과×점증구간’ 교차항의 계수는 0.221, ‘정책효과’ 계수는 -0.0167이므로, 점증구간에 속하는 가구의 가구주 경제활동참가율 순효과는 0.2043이다. 선형확률함수 모형임을 고려할 때 이 결과는 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9년 확대·개편된 EITC 제도로 인하여 20.4%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점증구간에 속하지 않은 가구(평탄 혹은 점감구간)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1.67%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주당근로시간의 경우 노동공급 효과는 점증구간 소속 가구에서만 나타나는데, 해당 계수가 1.465이기 때문에 2019년 확대·개편된 EITC로 인하여 점증구간 소속 가구의 주당 근로시간이 1.465시간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II-5〉 2018년 가구 근로소득별 이질적 노동공급 효과

	(1) 경제활동 참가 여부	(2) 주된 일자리 주당근로시간	(3) 주된 일자리 월평균임금	(4) 주된 일자리 시간당임금	(5) 주된 일자리 고용보험가입
정책효과	-0.0167** (0.00713)	-0.0834 (0.128)	-0.868 (1.306)	-0.00613 (0.00926)	0.00190 (0.00957)
정책효과 ×점증구간	0.221*** (0.0535)	1.465* (0.789)	0.786 (1.719)	0.00788 (0.0298)	0.0130 (0.00783)
관측치수	2,874	2,548	2,548	2,548	2,548
R^2	0.104	0.009	0.016	0.005	0.008
집단수	1,437	1,274	1,274	1,274	1,274

- 주: 1. 모든 회귀식에서 가구 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함. 광역시도별 군집표준오차를 고려함
 2. (2)~(5)의 경우,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 가구주에 한정함
 3. ‘정책효과’란 2019년 기준 재산요건을 만족한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2019년 이후를 가리키는 더미변수 간의 교차항의 계수를 의미
 4. 분석표본은 2019년 기준 30세 이상 및 가구의 재산총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
 5. 배우자가 존재하는 가구에 한정함
 6. () 안의 수치는 표준 오차를 의미.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도 10%, 5%, 1% 수준을 의미함

자료: KIPF 자체 설문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15) 재산요건이 4억원 이하인 가구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와 2019년을 가리키는 더미변수 간의 교차항

〈표 VII-6〉에서는 2018년 가구 근로소득별 이질적 노동공급 효과를 가구 유형별로 보여주고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점증구간에 속한 가구 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7.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모든 가구 유형을 고려한 〈표 VII-5〉에서 도출한 결과값을 상회하는 값이다. 점증구간에 속한 단독가구 가구주의 근로시간 역시 10.54시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단독가구의 경우, 점증구간에 속한 가구 가구주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월평균임금(41.58만원), 주된 일자리의 고용보험 가입확률(13.1%)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늘어났다. 이러한 노동공급 변화는 평탄이나 점감구간에 속한 가구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홑벌이가구의 경우에도 점증구간에 속하는 가구의 가구주의 노동공급이 2018년 대비 2019년에 유의미하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나, 점증구간 가구의 가구주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주당근로시간이 큰 폭(18.72시간)으로 늘어났으며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취득확률도 소폭(3.33%) 상승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도 점증구간에 속한 가구의 가구주의 노동공급이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6% 증가, 주당근로시간은 3.38시간 증가, 월평균임금은 18.8만원 증가하였고,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확률도 7.6% 증가하였다.

〈표 VII-6〉 2018년 가구 근로소득별 이질적 노동공급 효과: 가구 유형별

단독가구 유형					
	(1) 경제활동 참가 여부	(2) 주된 일자리 주당근로시간	(3) 주된 일자리 월평균임금	(4) 주된 일자리 시간당임금	(5) 주된 일자리 고용보험가입
정책효과	-0.0156* (0.00759)	-0.762** (0.302)	0.571 (2.454)	0.00959 (0.0179)	0.000289 (0.0229)
정책효과 ×점증구간	0.391*** (0.0890)	11.31*** (3.276)	41.58*** (13.20)	-0.0457*** (0.0116)	0.131*** (0.0299)
관측치수	1,036	1,036	1,036	986	1,036
R^2	0.315	0.226	0.169	0.003	0.050
집단수	518	518	518	511	518
출발이가구 유형					
	(1) 경제활동 참가 여부	(2) 주된 일자리 주당근로시간	(3) 주된 일자리 월평균임금	(4) 주된 일자리 시간당임금	(5) 주된 일자리 고용보험가입
정책효과	-0.0833 (0.0826)	-2.800 (3.188)	-14.23 (18.22)	0.0262 (0.0171)	-0.117 (0.0831)
정책효과 ×점증구간	0.250 (0.178)	18.72** (7.617)	24.77 (23.73)	-0.137* (0.0774)	0.0333* (0.0178)
관측치수	160	160	160	157	160
R^2	0.194	0.220	0.118	0.148	0.050
집단수	80	80	80	80	80
맞벌이가구 유형					
	(1) 경제활동 참가 여부	(2) 주된 일자리 주당근로시간	(3) 주된 일자리 월평균임금	(4) 주된 일자리 시간당임금	(5) 주된 일자리 고용보험가입
정책효과	-0.0161 (0.0104)	-0.390 (0.384)	-3.851 (2.726)	-0.0127 (0.0114)	-0.00381 (0.0185)
정책효과 ×점증구간	0.0761* (0.0392)	3.383** (1.421)	18.80** (6.858)	0.152 (0.0957)	0.0761** (0.0323)
관측치수	1,678	1,678	1,678	1,479	1,678
R^2	0.026	0.034	0.021	0.062	0.026
집단수	839	839	839	757	839

- 주: 1. 모든 회귀식에서 가구 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함. 광역시도별 군집표준오차를 고려함
 2. (2)~(5)의 경우,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 가구에 한정함
 3. '정책효과'란 2019년 기준 재산요건을 만족한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2019년 이후를 가리키는 더미변수 간의 교차항의 계수를 의미
 4. 분석표본은 2019년 기준 30세 이상 및 가구의 재산총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
 5. () 안의 수치는 표준 오차를 의미,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도 10%, 5%, 1% 수준을 의미함

자료: KIPF 자체 설문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VII-7〉 2018년 가구 근로소득별 이질적 노동공급 효과: 하위표본 구성

각 가구 유형별 점증구간 해당 가구					
	(1) 경제활동 참가 여부	(2) 주된 일자리 주당근로시간	(3) 주된 일자리 월평균임금	(4) 주된 일자리 시간당임금	(5) 주된 일자리 고용보험가입
정책효과	0.107 (0.0805)	0.801 (0.493)	2.126 (1.848)	0.0467 (0.0353)	-
관측치수	436	172	172	172	-
R^2	0.170	0.014	0.011	0.003	-
집단수	218	86	86	86	-
각 가구 유형별 평탄구간 해당 가구					
	(1) 경제활동 참가 여부	(2) 주된 일자리 주당근로시간	(3) 주된 일자리 월평균임금	(4) 주된 일자리 시간당임금	(5) 주된 일자리 고용보험가입
정책효과	-0.0211 (0.0161)	0.387 (0.697)	2.903 (3.037)	0.00986** (0.00378)	-0.0108 (0.0181)
관측치수	214	210	210	210	210
R^2	0.021	0.001	0.035	0.086	0.004
집단수	107	105	105	105	105
각 가구 유형별 점감구간 해당 가구					
	(1) 경제활동 참가 여부	(2) 주된 일자리 주당근로시간	(3) 주된 일자리 월평균임금	(4) 주된 일자리 시간당임금	(5) 주된 일자리 고용보험가입
정책효과	0.00320 (0.00991)	-0.0738 (0.131)	-2.479 (1.935)	-0.0121 (0.0100)	0.000517 (0.0110)
관측치수	1,780	1,728	1,728	1,728	1,728
R^2	0.029	0.002	0.027	0.038	0.009
집단수	890	864	864	864	864

- 주: 1. 모든 회귀식에서 가구 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함. 광역시도별 군집표준오차를 고려함
 2. (2)~(5)의 경우,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 가구에 한정함
 3. '정책효과'란 2019년 기준 재산요건을 만족한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2019년 이후를 가리키는 더미변수 간의 교차항의 계수를 의미
 4. 분석표본은 2019년 기준 30세 이상 및 가구의 재산총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
 5. () 안의 수치는 표준 오차를 의미.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도 10%, 5%, 1% 수준을 의미함

자료: KIPF 자체 설문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앞서 살펴본 기본모형하에서의 노동공급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상기할 때, 단독가구를 제외하고는 긍정적 노동공급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표 VII-5>~<표 VII-6>에서는 ‘사전적 점증구간’에 속하지 않는 경우 평균적인 가구에 대한 노동공급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2019년 확대·개편된 EITC 제도로 인한 노동공급이 단독가구 혹은 각 가구 유형별 점증구간에 포함된 가구에서 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점증구간 소속 가구를 판별하는 방법은 상당히 거칠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018년 근로소득과 2019년 근로소득 간의 상관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2018년 근로소득 수준을 ‘외생적’ 조건을 설정할 때 활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강건성 분석 차원에서 근로소득 기준 점증·평탄·점감구간별로 하위표본을 구성하여 분석을 했을 때(<표 VII-7>)는 <표 VII-6>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3. EITC 제도 인지 수준별 노동공급 효과

처리집단에서 2019년 기준 비교집단에 비하여 노동공급이 늘어났을 때, 이렇게 늘어난 노동공급이 2019년 확대·개편된 EITC 제도로 인한 결과라고 간주하려면 기본적으로 처리집단이 이 제도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EITC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은 집단에서 노동공급이 늘어난 것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를 사전적으로 장려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아닌 ‘사후적인 생활 보조금’ 지급사례로 간주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소득구간이 ‘점증구간’인 경우 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를 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변수를 제도 인지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제도 인지 변수와 정책효과 변수 간의 교차항의 계수 추정량이 EITC의 인지 수준별 이질적 노동공급 효과를 나타낸다.

<표 VII-8>에서는 모든 가구 유형에 대하여 인지 수준별 가구주의 노동공급 효과를 보여준다. 대체로 인지를 더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공급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단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EITC 제도를 인지하는 경우 오히려 노동공급이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음(-)의 효과는 홀별이가구의 가구주에서도 나타났다. EITC 제도의 점증구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을수록, 주된 일자리 주당근로시간이 감소, 월평균임금이 감소, 주된 일자리 고용보험 가입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별이가구나 단독가구 유형의 경우에는 제도 인지에 따른 이질적인 EITC 제도 개편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KIPF 자체 설문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인지 변수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EITC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이해, EITC 개념에 대한 이해, EITC 수급조건(재산, 소득 등)에 대한 이해 등이다. 실질적으로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 제도 이해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인지 관련 변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연구로 남겨둔다.

〈표 VII-8〉 EITC 제도 인지 수준별 이질적 노동공급 효과

	(1) 경제활동 참가 여부	(2) 주된 일자리 주당근로시간	(3) 주된 일자리 월평균임금	(4) 주된 일자리 시간당임금	(5) 주된 일자리 고용보험가입
정책효과	0.0215 (0.0155)	0.0559 (0.126)	-0.776 (1.547)	-0.00638 (0.00875)	0.00383 (0.00912)
정책효과 ×제도인지	-0.0285* (0.0149)	-0.230 (0.180)	-0.235 (1.346)	0.00496 (0.00713)	-0.00634 (0.0173)
관측치수	2,874	2,548	2,548	2,548	2,548
R^2	0.003	0.000	0.015	0.005	0.008
집단수	1,437	1,274	1,274	1,274	1,274

- 주: 1. 모든 회귀식에서 가구 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함. 광역시도별 군집표준오차를 고려함
 2. (2)~(5)의 경우,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 가구주에 한정함
 3. '정책효과' 란 2019년 기준 재산요건을 만족한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2019년 이후를 가리키는 더미변수 간의 교차항의 계수를 의미
 4. 분석표본은 2019년 기준 30세 이상 및 가구의 재산총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
 5. 배우자가 존재하는 가구에 한정함
 6. () 안의 수치는 표준 오차를 의미.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도 10%, 5%, 1% 수준을 의미함

자료: KIPF 자체 설문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VII-9〉 EITC 제도 인지 수준별 실질적 노동공급 효과: 가구 유형별

단독가구 유형					
	(1) 경제활동 참가 여부	(2) 주된 일자리 주당근로시간	(3) 주된 일자리 월평균임금	(4) 주된 일자리 시간당임금	(5) 주된 일자리 고용보험가입
정책효과	0.0529*** (0.0135)	1.120** (0.415)	6.937*** (1.825)	0.00117 (0.0211)	0.0236 (0.0212)
정책효과 ×제도인지	-0.00812 (0.0257)	0.467 (0.950)	5.554 (4.602)	0.0235 (0.0175)	-0.00504 (0.0325)
관측치수	1,036	1,036	1,036	986	1,036
R^2	0.035	0.020	0.031	0.001	0.001
집단수	518	518	518	511	518
출발이가구 유형					
	(1) 경제활동 참가 여부	(2) 주된 일자리 주당근로시간	(3) 주된 일자리 월평균임금	(4) 주된 일자리 시간당임금	(5) 주된 일자리 고용보험가입
정책효과	-0.0456 (0.0858)	0.162 (3.869)	-9.876 (18.38)	0.0116* (0.00615)	-0.0833 (0.0826)
정책효과 ×제도인지	-0.0377 (0.0298)	-3.445* (1.889)	-6.541* (3.621)	0.00955 (0.0135)	-0.133* (0.0690)
관측치수	160	160	160	157	160
R^2	0.053	0.049	0.073	0.004	0.117
집단수	80	80	80	80	80
맞벌이가구 유형					
	(1) 경제활동 참가 여부	(2) 주된 일자리 주당근로시간	(3) 주된 일자리 월평균임금	(4) 주된 일자리 시간당임금	(5) 주된 일자리 고용보험가입
정책효과	0.000768 (0.0156)	0.368 (0.562)	0.223 (3.744)	-0.00509 (0.0144)	0.000692 (0.0190)
정책효과 ×제도인지	-0.0374 (0.0259)	-1.722 (1.061)	-8.702 (5.886)	-0.00855 (0.0116)	0.0392 (0.0231)
관측치수	1,678	1,678	1,678	1,479	1,678
R^2	0.016	0.022	0.007	0.026	0.017
집단수	839	839	839	757	839

- 주: 1. 모든 회귀식에서 가구 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함. 광역시도별 군집표준오차를 고려함
 2. (2)~(5)의 경우,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 가구에 한정함
 3. '정책효과'란 2019년 기준 재산요건을 만족한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2019년 이후를 가리키는 더미변수 간의 교차항의 계수를 의미
 4. 분석표본은 2019년 기준 30세 이상 및 가구의 재산총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
 5. () 안의 수치는 표준 오차를 의미.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도 10%, 5%, 1% 수준을 의미함

자료: KIPF 자체 설문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20대 가구주의 노동공급 효과

20대 가구주에 국한하여 2019년 확대·개편된 EITC 제도의 노동공급 효과를 살펴본다. 연령의 특성상 맞벌이나 홀벌이가구 표본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단독가구 유형만 고려하였다. <표 VII-10>에서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모든 노동공급 지표와 관련된 계수가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20대 청년들이 EITC의 ‘자산조건’ 등을¹⁶⁾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20대 가구주 표본이 KIPF 자체 조사에서 불완전하게 포착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표 VII-10> 20대 가구주의 노동공급 효과: 단독가구 유형

	(1) 경제활동 참가 여부	(2) 주된 일자리 주당근로시간	(3) 주된 일자리 월평균임금	(4) 주된 일자리 시간당임금	(5) 주된 일자리 고용보험가입
정책효과	-0.213 (0.139)	-8.578 (5.061)	-34.89 (25.68)	-0.00324 (0.0327)	-0.0978 (0.0974)
관측치수	168	168	168	148	168
R^2	0.173	0.160	0.148	0.015	0.021
집단수	84	84	84	80	84

주: 1. 모든 회귀식에서 가구 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함. 광역시도별 군집표준오차를 고려함

2. (2)~(5)의 경우,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 가구주에 한정함

3. ‘정책효과’란 2019년 기준 재산요건을 만족한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2019년 이후를 가리키는 더미변수 간의 교차항의 계수를 의미

4. 분석표본은 2019년 기준 30세 이상 및 가구의 재산총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

5. () 안의 수치는 표준 오차를 의미.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도 10%, 5%, 1% 수준을 의미함

자료: KIPF 자체 설문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5. 강건성 분석 – 재산요건 대체변수

마지막으로 재산요건에 대한 대체변수를 사용하여 강건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기존에서는 2019년 기준 가구의 총재산금액을 대체변수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2019년 EITC 제도가 확대·개편되기 이전의 사전적인 변수가 아니라 확대·개편된

16) 가구주의 연령별 더미변수를 삽입하여 이질적 노동공급 효과를 분석할 수도 있다.

이후 사후적인 변수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노동공급 수준도 2019년 기준이므로 핵심적인 정책변수와 종속변수가 독립적으로 생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8년이나 2017년 기준 가구의 총재산금액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부동산 금액의 경우 단시간에 조정할 수 있는 자산은 아니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외생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가구의 총재산금액이 4억원 미만인, 부동산 관련 재산이 4억원 미만인 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표 VII-11〉은 관련 정량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회귀식을 분석한 경우에는 모든 노동공급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단독가구 가구주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5.12% 증가, 주된 일자리에서의 주된 근로시간이 1.205시간 증가, 주된 일자리 월평균임금이 7.396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근로시간, 월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취득확률 등이 모두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시간당임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소 상승(150원)하였다.

〈표 VII-11〉 가구주의 노동공급 효과(재산요건 대체변수)

모든 가구 유형					
	(1) 경제활동 참가 여부	(2) 주된 일자리 주당근로시간	(3) 주된 일자리 월평균임금	(4) 주된 일자리 시간당임금	(5) 주된 일자리 고용보험가입
정책효과	0.0122 (0.0145)	0.0369 (0.125)	-0.780 (1.115)	-0.00651 (0.00747)	-0.00154 (0.0112)
관측치수	2,874	2,548	2,548	2,548	2,548
R^2	0.001	0.000	0.015	0.005	0.008
집단수	1,437	1,274	1,274	1,274	1,274
단독가구 유형					
	(1) 경제활동 참가 여부	(2) 주된 일자리 주당근로시간	(3) 주된 일자리 월평균임금	(4) 주된 일자리 시간당임금	(5) 주된 일자리 고용보험가입
정책효과	0.0512*** (0.0118)	1.205*** (0.410)	7.396*** (1.757)	0.00180 (0.0193)	0.0247 (0.0217)
관측치수	1,036	1,036	1,036	986	1,036
R^2	0.034	0.020	0.028	0.000	0.001
집단수	518	518	518	511	518
홀벌이가구 유형					
	(1) 경제활동 참가 여부	(2) 주된 일자리 주당근로시간	(3) 주된 일자리 월평균임금	(4) 주된 일자리 시간당임금	(5) 주된 일자리 고용보험가입
정책효과	-0.0619 (0.0906)	-0.914 (3.914)	-12.96 (19.66)	0.0150* (0.00755)	-0.120 (0.0892)
관측치수	160	160	160	157	160
R^2	0.050	0.039	0.071	0.003	0.050
집단수	80	80	80	80	80
맞벌이가구 유형					
	(1) 경제활동 참가 여부	(2) 주된 일자리 주당근로시간	(3) 주된 일자리 월평균임금	(4) 주된 일자리 시간당임금	(5) 주된 일자리 고용보험가입
정책효과	-0.0104 (0.0146)	-0.139 (0.514)	-1.722 (3.136)	-0.00750 (0.0110)	-0.00488 (0.0171)
관측치수	1,678	1,678	1,678	1,479	1,678
R^2	0.013	0.018	0.003	0.025	0.014
집단수	839	839	839	757	839

- 주: 1. 모든 회귀식에서 가구 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함. 광역시도별 군집표준오차를 고려함
 2. (2)~(5)의 경우,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 가구주에 한정함
 3. '정책효과'란 2019년 기준 재산요건을 만족한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2019년 이후를 가리키는 더미변수 간의 교차항의 계수를 의미
 4. 분석표본은 2019년 기준 30세 이상 및 가구의 재산총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
 5. () 안의 수치는 표준 오차를 의미.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도 10%, 5%, 1% 수준을 의미함

자료: KIPF 자체 설문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VIII 결론

저소득 근로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가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확대 및 개편되었다.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한 연령, 소득, 재산 요건이 모두 완화되었으며 최대 지급액도 늘었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 가구와 지급금액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확대 및 개편된 근로장려세제는 실질적으로 2018년 귀속소득분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2018년 전후로 지급 규모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 근로장려금 지급가구 수는 169만가구, 지급금액은 1조 280억원인데 반해 2018년의 근로장려금 지급가구 수는 388만가구, 지급금액은 4조 3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18년 국세(293.6조원)의 1.46%에 해당하며, 사회복지 재정(144.7조원)의 2.9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확대된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노동공급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정부에 의한 근로장려세제 제도의 변화는 외생적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생성을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가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현실적으로 찾기는 어려웠다. 재정패널조사나 한국노동패널조사와 같은 패널조사는 조사 시점 이후 발표 시점까지 통상적으로 2년이라는 간극이 존재하는 데다가 이러한 패널조사는 전국 가구 전체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적용대상 가구 규모가 한정적이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직접 설문문항을 작성하고 닐슨코리아에 의뢰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2020년 상반기에 설문문항을 작성하여 2020년 하반기에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가구 인적사항, 주거 점유형태, 경제활동, 근로장려금 제도 인지 여부,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 가구 소득, 공적이전 소득 수급 여부, 가구 자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1,600가구에 대한 설문이 수집되었다. 가구설문을 수행할 때는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비율이 높고, 근로장려금의 자산요건을 만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집중하였다. 근로장려금의 여러 요건 중에서 자산요건에 초점을 맞춘 것은 자산요건의 경우 근로장려금 수혜를 목적으

로 가구가 임의로 쉽게 변경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정량분석은 기본적으로 이중차이법(differences in differences)을 적용하였으며, 분석대상으로 총 자산 규모가 3억원 이하인 가구만을 포함하고, 처리집단은 자산요건을 만족하는 집단으로, 통제집단은 자산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집단으로 상정한 후, 가구 유형별(단독·홀벌이·맞벌이)별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 설계에서 처리집단은 2019년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잠재적 수급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 수혜를 목적으로 노동공급을 변화시켜 근로소득 수준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 집단이다. 한편, 통제집단은 자산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근로장려세제 수급을 목적으로 근로소득을 변화시킬 유인이 없으면서도, 처리집단과 유사한 지역에서 생활하며 자산소득도 유사하다. 이 점에서 이러한 통제집단은 근로장려세제가 2019년 확대 및 개편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집단의 가상적인 노동공급 수준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분석결과 2019년 근로장려세제 개편안으로 인한 노동공급 효과가 특정 집단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전체에 대한 이중차이법을 적용했을 때는 노동공급의 모든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구 유형별로 집단을 나누었을 경우 단독가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대체지표로 자산을 측정한 경우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단독가구의 경제활동참가확률 및 주된 일자리에서의 주된 근로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월평균임금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홀벌이가구주, 맞벌이가구주, 맞벌이 가구의 배우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노동공급 효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소득구간별 노동공급 효과를 검토했을 때, '점증구간'에 속하는 가구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근로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 유형별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해석할 때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본고에서는 홀벌이와 맞벌이의 가구유형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였고, 홀벌이와 맞벌이를 정의할 때 각 가구에서 보고하는 '가구주'의 개념에 착안하여, 상대적인 임금수준을 비교하지는 않았다. 가구주-배우자, 혹은 남성-여성으로 구분한 가구분석은 추가적으로 더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향후 연구로 남겨둔다.

두번째로,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노동공급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해서 본 제도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또다른 목적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핀셋 지원을 통하여 소득불평등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2019년 근로장려세제의 개편은 점증구간보다 점감구간이 더 확대된 것을 고려하면, 노동공급의 효과보다 소득재분배의 기능에 더 방점을 두어 근로장려세제가 개편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록 2019년 근로장려세제 개편의 노동공급 효과를 본 연구의 결과 하나만을 가지고 단정지어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현재 결과를 신뢰한다면 근로장려세제가 일부 저임금 가구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점증-평탄-점감 구간의 구분을 고려하지 않은 회귀식에서는 노동공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평탄 및 점감 구간에서의 노동공급 감소효과가 점증구간의 노동공급 증대효과를 상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근로장려세제 확대의 노동공급 측면 및 재정측면의 순효과가 긍정적인지에 대한 보다 엄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설문조사 자료 입수 후 분석기간이 짧았던 관계로 여러 가지 분석기법을 충분히 적용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통제집단을 설정할 때 본고에서는 재산요건만 고려하였다. 그러나 2019년 근로장려세제는 재산요건 외에도 소득구간별 수급액이나 대상연령 측면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다른 기준으로 통제집단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성호, 「근로장려세제(EITC)의 일자리 창출 효과」,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제10호, 2017, pp. 325~339.
- 김재진 · 이상은 · 이철인, 『조세지출(근로장려세제) 종합 심층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김태우 · 우석진 · 안종길 · 빈기범, 「근로장려세제가 수혜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 『유라시아연구』, 제13권 제13호, 2016, pp. 85~109.
- 박지원, “OLS with propensity score residual in panel data models and labor supply effects of the EITC in sample-selection models,”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20.
- 박지혜 · 이정민, 「근로장려세제가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 『노동경제논집』, 제41권 제3호, 2018, pp. 1~59.
- 신상화, 「EITC 확대 개편이 가구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 『예산정책연구』, 제8권 제1호, 2019, pp. 69~100.
- 신상화 · 김문정, 『근로장려세제가 가구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최저임금제도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9-0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신우리 · 송헌재,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의 효과 분석」, 『응용경제』, 제20권 제2호, 2018, pp. 107~138.
- 안종석 · 송헌재 · 홍우형, 『근로 · 자녀장려금제도 성과분석 및 운용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이대웅 · 권기현 · 문상호,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 성향점수 매칭(PSM) 이중삼중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2호, 2015, pp. 27~56.
- 정의룡, 「한국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효과성 분석: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8권 제1호, 2014, pp. 181~206.
- 정찬미, 「아동수당과 아동관련 조세지원 제도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효과」, 『사회복지정책』, 제44권 제1호, 2017, pp. 47~78.

- 정찬미 · 김재진,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기준 변경과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이 홀
별이 및 맞벌이가구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사회보장연구』, 제31권 제
1호, 2015, pp. 233~253.
- 한중석 · 장용성 · 김선빈, 「근로장려세제의 거시경제적효과」, 『한국경제의 분석』, 제25
권 제2호, 2019, pp. 1~52.
- 홍민철 · 문상호 · 이명석, 「근로장려세제 효과 분석: 경제활동참여, 근로시간 및 개인별
빈곤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6권 제2호, 2016, pp. 1~27.
- 홍우형, 「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의 세수귀착효과 및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재정책논집』, 제21권 제3호, 2019, pp. 3~33.
- Cancian, M. and A. Levinson, “Labor supply effects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vidence from Wisconsin’s supplemental for families with three children,” Working
Paper, Washington, DC: Department of Economics, Georgetown University, 2006.
- Dickert, A., S. Houser, and J. K. Scholz,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ransfer
Programs: A Study of Labor Market and Program Participation,” *Tax Policy and
the Economy*, James M. Poterba (ed.),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and the MIT Press, 1995, pp. 1~50.
- Eissa, N., and J. B. Liebman, “Labor Supply Response to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1, 1996, pp. 605~637.
- Eissa, N., and H. W. Hoynes, “Behavioral Responses to Taxes: Lessons from the EITC
and Labor Supply”, *Tax Policy and Economy*, Vol. 20, 2006, pp. 73~110.
- Ellwood, David T. “The impac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social policy
reforms on work, marriage, and living arrangements,” *National tax journal*, Vol.
53, No. 4, 2000, pp. 1063~1105.
- Grogger, J., “The Effects of Time Limits, the EITC, and Other Policy Changes on
Welfare Use, Work, and Income among Female-Headed Famil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5, 2003, pp. 394~408
- Hoffman, S. D., and L. S. Seidman,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tipoverty
Effectiveness and Labor Market Effects*, W. 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1990.

Hoynes, Hilary W. and Ankur J. Patel., “Effective policy for reducing poverty and inequality?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53 No. 4, 2018, pp. 859~890.

Keane, Michael P. “A new idea for welfare reform,”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1995, pp. 2~28.

Kleven, Henrik., “The EITC and the extensive margin: A reappraisal,” No. w2640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9.

Lee, M. J., “Extensive and intensive margin effects in sample selection models; racial effects on wage,”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Vol. 180, 2017, pp. 817~839.

Meyer, B. D., and D. T. Rosenbaum, “Welfare,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he Labor Supply of Single Mother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6, 2001, pp. 1063~111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1&lsiSeq=224851#0000>, 검색일자: 2020. 2. 20.

〈 부록 1 〉 EITC의 소득재분배 및 기타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¹⁷⁾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일부 연구는 노동공급 효과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수혜자의 소비 행태, 거시경제적 효과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여기서는 EITC의 노동공급 이외의 효과에 대해 분석한 주요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찬미·김재진(2015)은 2014년도에 적용된 EITC 지급기준 변경과 2015년부터 시행되는 자녀장려세제 도입이 홀벌이 및 맞벌이가구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및 그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근로소득자 표본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를 홀벌이 및 맞벌이가구로 변경한 것은 맞벌이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는 전체 가구의 빈곤율과 소득재분배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태우 외(2016)는 근로장려세제가 수혜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09년 제도 도입 전후 자료를 이용한 삼중차분기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 수혜가구는 소비를 늘리지 않고 저축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를 근로장려금을 항상소득 증가가 아닌 일시소득 증가로 인식하여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상화(2019)는 EITC 제도 확대가 기존 수급가구와 신규 수급가구의 경상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EITC 제도 확대 개편에 따른 가구소득 불평등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한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단독가구주 연령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이 모두 완화됨에 따라 2019년에는 보다 많은 저소득 근로가구가 수급대상이 되고 그 결과 가구소득 불평등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구체적으로 제도 확대 개편에 따라 수급가구 수는 약 175만가구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산요건보다는 소득요건 완화에 더 크게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편안의 지니계수 개선률은 -1.027%로, 개정 전 -0.363%에 비해 약 2.8배 큰 것으로 분석하였다.

17) 자녀장려금과 관련된 연구로 정찬미(2017)도 고려할 수 있다.

홍우형(2019)은 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으로 인한 세수의 귀착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EITC를 수급하는 단독가구가 가장 크게 증가하고, 2018년에 비해 2019년의 소득불평등지수 개선률이 약 3배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소득재분배 개선에는 지급액 상향 조정이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반면, 단독가구 연령조건 및 재산조건 완화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문에서 소개한 한중석·장용성·김선빈(2019)은 노동공급 효과 이외에도 근로장려세제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단독가구에 대한 연령 제한 폐지, 소득 및 재산요건 완화, 지급방식 개편 등 2019년 제도 개편으로, 고용률, 근로시간과 함께 총생산이나 총자본 등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으로 인해 기존에 노동공급을 하고 있는 가구들이 근로장려금 신규 지급대상 가구로 편입되면서 예방적 저축이 감소하여 총자본이 감소하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가구들이 추가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되면서 유효노동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생산도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부표 1〉 EITC의 소득재분배 및 기타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구분	연구목적	분석자료	연구방법론	주요 결과
정찬미·김재진 (2015)	- 2014년 EITC 지급기준 변경 및 2015년 자녀장려세제 도입이 홀벌이 및 맞벌이가구의 소득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계동향조사 2013년 자료	- 시뮬레이션 분석	-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를 홀벌이 및 맞벌이가구로 변경한 것은 맞벌이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 -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는 전체 가구의 빈곤율과 소득재분배에 긍정적 효과 존재
김태우 외 (2016)	- 근로장려세제가 수혜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가계동향조사 2008년과 2010년 월별자료	- 근로장려세제 도입 전후 자료를 활용한 삼중차분기법 분석	- 근로장려세제 수혜가구는 소비는 늘리지 않고 지출을 증가
신상화 (2019)	- EITC 확대가 수급가구의 경상소득에 미치는 영향 및 가구소득 불평등도 변화 분석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 자료	- EITC 확대 개편 내용을 이용한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분석	- 보다 많은 저소득 근로가구가 수급대상이 되고, 그 결과 가구소득 불평등도 완화
홍우형 (2019)	- 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으로 인한 세수의 귀착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	재정패널 10차년도 자료	- EITC 확대 개편 내용을 이용한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분석	- EITC를 수급하는 단독가구가 가장 크게 증가 - 2018년에 비해 2019년의 소득불평등지수 개선률이 약 3배 증가 - 소득재분배 개선에는 지급액 상향 조정이 가장 큰 기여
한종석 외 (2019)	- 2019년 근로장려세제 개편이 가구형태별 노동공급과 가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노동패널 지역별고용조사	-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 모형 구축 및 캘리브레이션 후 정책 분석	- EITC의 확대로 고용률은 상승하지만 근로시간은 감소 - 총지분과 유효노동이 감소하여 총생산 감소

자료: 저자 작성

〈부표 2〉 EITC 수급요건별 기초통계량

가구 유형	eitc_전체 수급 요건 만족	year	obs	가구주 경할 여부	가구주 근로시간	가구주 월임금	가구 재산 총금액
단독가구	비해당	2018	319	0.94	37.34	186.33	12,734
홀벌이가구	비해당	2018	21	0.95	34.86	192.00	19,294
맞벌이가구	비해당	2018	411	0.93	39.18	237.74	19,099
단독가구	해당	2018	296	0.88	26.08	92.23	6,578
홀벌이가구	해당	2018	60	0.97	35.83	142.98	8,152
맞벌이가구	해당	2018	486	0.86	34.55	156.41	7,860
단독가구	비해당	2019	319	0.99	39.48	200.02	12,734
홀벌이가구	비해당	2019	21	1.00	36.62	202.71	19,294
맞벌이가구	비해당	2019	411	0.92	38.69	239.93	19,099
단독가구	해당	2019	296	0.95	27.40	95.86	6,578
홀벌이가구	해당	2019	60	1.00	38.65	149.18	8,152
맞벌이가구	해당	2019	486	0.83	33.00	150.69	7,860

자료: 설문조사 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

PART I. 가구원 인적 사항

Q01. 2019년 12월 31일 기준 귀하의 가구원 인적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가구원1은 가구를 기준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항목	보기문항	가구원 1 (가구주)	가구원 2	가구원 3	가구원 4	가구원 5	가구원 6	가구원 7	가구원 8
0) 설문작성주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성별	1. 남성 2. 여성								
2-1) 실제 출생년도(양력기준) (4자리)									
2-2) 실제 출생월(양력기준) (2자리)									
3) 혼인상태	1. 미혼 2. 결혼/동거 3. 이혼 4. 사별 5. 별거								
4) 가구주와의 관계	1. 가구주 본인 2. 배우자 3. 가구주 자녀 4. 가구주 자녀의 배우자 5. 가구주 자녀의 자녀 및 그 배우자 6. 가구주의 부모 7. 배우자의 부모 8. 중손자녀 및 그 배우자 9.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10.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11. 기타 친인척								
5-1) 최종 교육기관	1. 무학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4년제 미만) 6. 대학교(4년제 이상) 7. 대학원 석사 과정 8. 대학원 박사 과정								
5-1)=2~8 인 경우인 5-2) 졸업 여부	1. 재학 2. 중퇴 3. 휴학 4. 수료 5. 졸업 6. 검정고시 자격 취득								
6-1) 경제 활동상태	1. 취업자 2. 실업자 3. 비경제활동인구								
6-2) 중사 상 지위	1. 상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2. 임시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 3.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 고용원이 있는 사업주 6. 무급가족종사자								
6-3) 직업 형태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7. 기능원 또는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차기계 조작 또는 조립 종사자 9. 단순 노무 종사자 10. 직업군인 11. 기타 취업								

PART II. 주거 점유형태

Q02. 2019년 12월 31일 기준 귀하의 주거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자가 (☞ Q07로 이동) | ⑤ 무상임대 (☞ Q07로 이동) |
| ② 전세 (☞ Q03 응답 후 Q07로 이동) | ⑥ 공공임대 (☞ Q05로 이동) |
| ③ 월세 (☞ Q03으로 이동) | ⑦ 기타(적을 것 _____) (☞ Q07로 이동) |
| ④ 전월세 (☞ Q04로 이동) | |

Q03. 귀하의 주거 점유형태가 전세나 월세인 경우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	---	----	----	----	---

 만원

Q04. 귀하의 주거 점유형태가 월세나 전월세인 경우 지출하시는 월세는 얼마입니까?

(정기적인 경우) 월

천만	백만	십만	만
----	----	----	---

 만원 또는 (부정기적인 경우) 연간

천만	백만	십만	만
----	----	----	---

 만원

Q05. 귀하의 주거 점유형태가 공공임대인 경우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영구임대 ② 국민임대 ③ 행복주택

Q06. 귀하의 주거 점유형태가 공공임대인 경우 임대료에 대한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	---	----	----	----	---

 만원

PART III. 가구주/배우자의 경제활동

Q07. 귀댁의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께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소득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가? 경제활동을 한 시기와 일자리 변경된 적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을 모두 응답해주시고, 또한 구직활동 수행기간과 주된 일자리에 대한 특성을 응답해 주십시오.

	가구주				가구주 배우자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1) 2018년 소득을 목적으로 경제활동 수행여부	① 경제활동 수행 ② 미수행		① 경제활동 수행 ② 미수행		① 경제활동 수행 ② 미수행		① 경제활동 수행 ② 미수행	
2) 소득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한 시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① 1월	④ 4월	⑦ 7월	⑩ 10월	① 1월	④ 4월	⑦ 7월	⑩ 10월
	② 2월	⑤ 5월	⑧ 8월	⑪ 11월	② 2월	⑤ 5월	⑧ 8월	⑪ 11월
	③ 3월	⑥ 6월	⑨ 9월	⑫ 12월	③ 3월	⑥ 6월	⑨ 9월	⑫ 12월
3) 일자리를 변경한 시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① 1월	④ 4월	⑦ 7월	⑩ 10월	① 1월	④ 4월	⑦ 7월	⑩ 10월
	② 2월	⑤ 5월	⑧ 8월	⑪ 11월	② 2월	⑤ 5월	⑧ 8월	⑪ 11월
	③ 3월	⑥ 6월	⑨ 9월	⑫ 12월	③ 3월	⑥ 6월	⑨ 9월	⑫ 12월
4) 구직활동을 수행한 개월 수	12개월 중 총 <input type="text"/> 개월				12개월 중 총 <input type="text"/> 개월			
5) 주된 일자리에 대한 문항								
a) 월평균임금 (세전)	월평균 <input type="text"/> 만원				월평균 <input type="text"/> 만원			
b) 평균 주당 근로시간	주당 <input type="text"/> 시간				주당 <input type="text"/> 시간			
c) 파견이나 용역근로자 여부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해당		② 비해당	
d)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해당		② 비해당	
e) 일시적으로 근무 (일일근로자 등)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해당		② 비해당	
f)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부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해당		② 비해당	
g) 고용보험가입여부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해당		② 비해당	

"일자리"에 대한 정의

- 1주 이상 동일한 일을 지속할 경우 일자리로 간주한다. 일회성으로 1주 미만 일한 경우에는 일자리로 보지 않는다.
- 다. 재난지역 세부 사항에 1주 미만 일한 경우에는 기간주에 1시간이라도 일했다면 일자리로 간주한다.
- 함께 사는 가족이 경영하는 가정용 물리적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사업을 돕는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주당 18시간 이상 일을 해야 일자리로 간주한다.
- 비임금근로자 중 고령의 물리적 사업공간이 없고 피고용인을 두지 않으며, 본인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로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학생이 방문교사, 골프장 정비조원, 보행실제사 및 각종 금융상품, 화물지입차량 기사, 택배기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근로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학생 등이 학업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일을 1주 이상 하였을 경우 일자리로 간주한다.

"일자리 개수" 산정 시

- 상용 및 임시근로자의 경우 일하는 기업체가 변경된 경우 서로 다른 일자리로 간주. 기업체는 같고 사업체만 바뀌었다면 서로 같은 일자리로 간주한다.
- 건설현장 일용노동자, 파출부, 가사간병 도우미 등과 같이 새벽시장 인력사무소, 아는 사람 등을 통해 매달매달 일거리가 있을 때 고용되어 하는 형태로서 일하는 장소가 매우 불규칙한 경우에는 장소는 수시로 바뀌더라도 1개월 이상 공백 기간 없이 계속해서 같은 일을 하였을 경우 하나의 일자리로 간주한다. 공백이 1개월 이상의 공백 기간이 있었던 일자리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 동일한 일터에서 총사업 지위가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간 변화가 있었던 경우 서로 다른 일자리로 간주한다.
- 파견 용역 근로자가 동일한 일터에서 일하다가 고용형태가 변경되었거나 동일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변경된 경우 등은 서로 다른 일자리로 간주한다.
- 자영업이 또는 무급가족종사자 경우 주 1회 이상 근무하는 경우 서로 다른 일자리로 간주한다.
-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부모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일을 돕다가 배우자가 운영하는 세대로 옮겨 온 경우 서로 다른 일자리로 간주한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정의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자사업주의 사업체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권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 명령은 사용자로부터 받음
	용역근로자	용역업체가 고용하고 다른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휘명령 등 모두를 용역업체의 지휘 감독을 받음
	일일근로자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어 이는 시일이니,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일시적으로 단기간 근무하는 자.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음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사업체)가 가장 일반적 형태의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근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의 정단, 계약의 반복갱신 여부, 명칭(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등) 등과 관계없음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회사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특차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로,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계약 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일해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

Q08. 귀택의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께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소득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셨습니까? 경제활동을 한 시기와 일자리 변경된 적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을 모두 응답해주시고, 또한 구직활동 수행기간과 주된 일자리에 대한 특성을 응답해 주십시오.

	가구주				가구주 배우자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1) 2019년 소득을 목적으로 경제활동 수행여부	① 경제활동 수행 ② 미수행		① 경제활동 수행 ② 미수행		① 경제활동 수행 ② 미수행		① 경제활동 수행 ② 미수행	
2) 소득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한 시기	2019년 상반기 ① 1월 ④ 4월 ② 2월 ⑤ 5월 ③ 3월 ⑥ 6월		2019년 하반기 ⑦ 7월 ⑩ 10월 ⑧ 8월 ⑪ 11월 ⑨ 9월 ⑫ 12월		2019년 상반기 ① 1월 ④ 4월 ② 2월 ⑤ 5월 ③ 3월 ⑥ 6월		2019년 하반기 ⑦ 7월 ⑩ 10월 ⑧ 8월 ⑪ 11월 ⑨ 9월 ⑫ 12월	
3) 일자리를 변경한 시기	2019년 상반기 ① 1월 ④ 4월 ② 2월 ⑤ 5월 ③ 3월 ⑥ 6월		2019년 하반기 ⑦ 7월 ⑩ 10월 ⑧ 8월 ⑪ 11월 ⑨ 9월 ⑫ 12월		2019년 상반기 ① 1월 ④ 4월 ② 2월 ⑤ 5월 ③ 3월 ⑥ 6월		2019년 하반기 ⑦ 7월 ⑩ 10월 ⑧ 8월 ⑪ 11월 ⑨ 9월 ⑫ 12월	
4) 구직활동을 수행한 시기	2019년 상반기 ① 1월 ④ 4월 ② 2월 ⑤ 5월 ③ 3월 ⑥ 6월		2019년 하반기 ⑦ 7월 ⑩ 10월 ⑧ 8월 ⑪ 11월 ⑨ 9월 ⑫ 12월		2019년 상반기 ① 1월 ④ 4월 ② 2월 ⑤ 5월 ③ 3월 ⑥ 6월		2019년 하반기 ⑦ 7월 ⑩ 10월 ⑧ 8월 ⑪ 11월 ⑨ 9월 ⑫ 12월	
5) 주된 일자리에 대한 문항								
a) 월평균임금 (세전)	월평균 <input type="text"/> 천만 <input type="text"/> 백만 <input type="text"/> 십만 <input type="text"/> 만 원				월평균 <input type="text"/> 천만 <input type="text"/> 백만 <input type="text"/> 십만 <input type="text"/> 만 원			
b) 평균 주당 근로시간	주당 <input type="text"/> 시간				주당 <input type="text"/> 시간			
c) 파견이나 용역근로자 여부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해당		② 비해당	
d)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해당		② 비해당	
e) 일시적으로 근무 (일일근로자 등)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해당		② 비해당	
f)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부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해당		② 비해당	
g) 고용보험가입여부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해당		② 비해당	

Q09. 귀택의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께서는 2020년 상반기 동안 소득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셨습니까? 경제활동을 한 시기와 일자리 변경된 적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을 모두 응답해주시고, 또한 구직활동 수행기간과 주된 일자리에 대한 특성을 응답해 주십시오.

	가구주				가구주 배우자			
	2020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1) 소득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한 시기	① 경제활동 수행 ② 미수행				① 경제활동 수행 ② 미수행			
2) 소득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한 시기	2020년 상반기 ① 1월 ② 2월 ③ 3월 ④ 4월 ⑤ 5월 ⑥ 6월				2020년 상반기 ① 1월 ② 2월 ③ 3월 ④ 4월 ⑤ 5월 ⑥ 6월			
3) 일자리를 변경한 시기	2020년 상반기 ① 1월 ② 2월 ③ 3월 ④ 4월 ⑤ 5월 ⑥ 6월				2020년 상반기 ① 1월 ② 2월 ③ 3월 ④ 4월 ⑤ 5월 ⑥ 6월			
4) 구직활동을 수행한 시기	2020년 상반기 ① 1월 ② 2월 ③ 3월 ④ 4월 ⑤ 5월 ⑥ 6월				2020년 상반기 ① 1월 ② 2월 ③ 3월 ④ 4월 ⑤ 5월 ⑥ 6월			
5) 주된 일자리에 대한 문항								
a) 월평균임금 (세전)	월평균 <input type="text"/> 천만 <input type="text"/> 백만 <input type="text"/> 십만 <input type="text"/> 만 원				월평균 <input type="text"/> 천만 <input type="text"/> 백만 <input type="text"/> 십만 <input type="text"/> 만 원			
b) 평균 주당 근로시간	주당 <input type="text"/> 시간				주당 <input type="text"/> 시간			
c) 파견이나 용역근로자 여부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해당		② 비해당	
d)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해당		② 비해당	
e) 일시적으로 근무 (일일근로자 등)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해당		② 비해당	
f)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부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해당		② 비해당	
g) 고용보험가입여부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해당		② 비해당	

PART IV. 근로장려금 제도 인지 여부 및 사전알림 여부

※ 근로장려금 제도 인지여부는 2019년 상반기 기준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Q10. 귀하께서는 2019년 상반기 당시 근로장려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셨습니까?

- ① 들어본 적 없었음 (⇒ Q12로 이동)
- ② 들어본 적은 있었으나, 내용은 잘 몰랐음
- ③ 들어본 적도 있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
- ④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었음

Q11. 2019년 상반기 당시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및 사업자를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알고 있었음
- ② 몰랐음

※ 2019년 상반기 당시 귀하께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요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Q12. [소득요건] 2019년 상반기 당시 귀하께서는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알고 있었음
- ② 몰랐음

Q13. [가구요건] 2019년 상반기 당시 귀하께서는 2019년 이후로 단독가구에 대한 나이 제한이 폐지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알고 있었음
- ② 몰랐음

Q14. [재산요건] 2019년 상반기 당시 귀하께서는 2019년 이후부터 재산 규모가 2억원 미만이고, 1억 4천만 원 이상~2억원 미만일 시, 근로장려금이 50% 감액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알고 있었음
- ② 몰랐음

Q15. [신청자격] 2019년 상반기 당시 귀하께서는 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 총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알고 있었음
- ② 몰랐음

※ 2019년 상반기 당시 귀하께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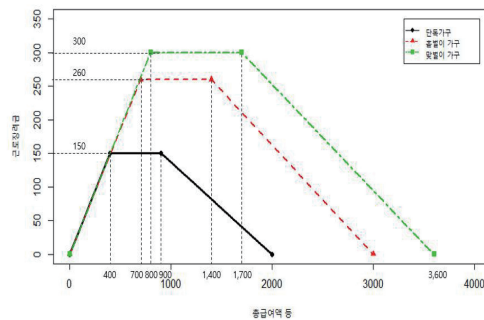
(참고 그림) 가구 구성 및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규모 (단위: 만원)

Q16.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근로장려금은 자원성향이 점점 올라가는 '점증 구간', '유지(평탄)구간', 점점 줄어드는 '감소 구간'이 있다는 것을 2019년 상반기 당시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알고 있었음
- ② 몰랐음

Q17.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증 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을 2019년 상반기 당시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알고 있었음
- ② 몰랐음



PART V.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

Q18. (SQ08=①임금근로자만 있는 가구의 경우) 2018년 한해 및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귀하의 가구가 국세청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내역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소득분에 대한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	2019년 상반기 귀속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2019년 하반기 귀속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1) 근로장려금 신청여부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2) 신청년월	□□□□년□□월	□□□□년□□월	□□□□년□□월
3) 국세청 안내 공지를 받은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4) 근로장려금 지급여부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5) 지급년월	□□□□년□□월	□□□□년□□월	□□□□년□□월

Q19. (SQ08=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있는 가구의 경우 또는 ①임금근로자와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모두 있는 경우) 2018년 및 2019년 한해 귀하의 가구가 국세청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내역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소득분에 대한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	2019년 귀속소득분에 대한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1) 근로장려금 신청여부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2) 신청년월	□□□□년□□월	□□□□년□□월
3) 국세청 안내 공지를 받은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4) 근로장려금 지급여부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5) 지급년월	□□□□년□□월	□□□□년□□월

Q20. (신청하였으나 한번도 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귀하께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 이유를 모두 선택해주시십시오.

- ① 소득이 없어서 ②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③ 가구 및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④ 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⑤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⑥ 과거에 부정수급자로 지정되어서
 ⑦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서 ⑧ 사업주가 소득을 과다(또는 과소) 신고해서 ⑨ 사업주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서
 ⑩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인 경우) 아직 수급 기간이 안되어서
 ⑪ 기타 (적을 것 : _____) ⑫ 잘 알지 못함

Q21. 과거 귀하께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하는 연도를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신청 경험	
	있음	없음
1) 2018년 (2017년 소득분)	①	②
2) 2017년 (2016년 소득분)	①	②
3) 2016년 (2015년 소득분)	①	②
4) 2015년 (2014년 소득분)	①	②
5) 2014년 (2013년 소득분)	①	②
6) 2013년 (2012년 소득분)	①	②
7) 2012년 (2011년 소득분)	①	②
8) 2011년 (2010년 소득분)	①	②
9) 2010년 (2009년 소득분)	①	②
10) 2009년 (2008년 소득분)	①	②

PART VI. 가구 소득 및 자산

[가구원 구분코드 유지]

Q22. 2019년 12월 31일 한해 기준 가구원 소득수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원 단위]

가구원1은 Q01에서 작성한 가구원1과 동일한 가구주이며, Q01에서 작성하신 가구원에 순서에 기준하여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1 (가구주)	가구원 2	가구원 3	가구원 4	가구원 5	가구원 6	가구원 7	가구원 8
1) 근로소득(a)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2)사업 소득	2-1) 수입(매출)(b)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2-2) (순)소득(c)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사업소득(b~c)은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짓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소득신고를 한 가구원만 기입합니다. ▶순소득(c): 연간의 총 사업수입(매출) 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즉 세무상의 소득									
(2)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원만 작성 2-3) 사업소득 업종									
① 도매업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②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③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④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⑤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허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⑥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3)부동 산 임대 소득	3-1) 토지(d)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3-2) 주택(e)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3-3) 상가 및 사무실(f)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3-4) 기타(g)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부동산 임대소득(d~g)은 부동산 임대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을 기입합니다. ▶주택(e)의 경우, 주택을 보유한 가구원이 월세를 놓은 경우만 응답을 받습니다.									
4) 이자 및 배당소득(h)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4)이자 및 배당소득은 100만원 이상의 순수이자 및 순수배당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응답을 받습니다.									
5)기타 소득	5-1) 타 가구에서 받은 용돈, 생활비, 학비 등(i)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5-2) 노인양양특별급여(j)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5-3) 그 외 기타소득(k)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PART VII. 공적이전 소득 수급 여부

[가구원 구분코드 유지]

Q23. 2019년 한해 동안 정부지원 현금 급여의 유형과 연간 받은 총액은 얼마입니까? (원 단위)

	가구원1		가구원2		가구원3	
	수급여부	수급총액	수급여부	수급총액	수급여부	수급총액
	① 수급받음 ② 해당사항 없음	(단위: 원)	① 수급받음 ② 해당사항 없음	(단위: 원)	① 수급받음 ② 해당사항 없음	(단위: 원)
1) 보훈급여금(연금식)	① ②	원	① ②	원	① ②	원
2) 보훈급여금(일시금)	① ②	원	① ②	원	① ②	원
3) 기초연금	① ②	원	① ②	원	① ②	원
4) 농업정정부보조금	① ②	원	① ②	원	① ②	원
5)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① ②	원	① ②	원	① ②	원
6) 아동수당	① ②	원	① ②	원	① ②	원
7) 국민연금/특수지역연금	① ②	원	① ②	원	① ②	원
8) 기타()	① ②	원	① ②	원	① ②	원

	가구원4		가구원5		가구원6	
	수급여부	수급총액	수급여부	수급총액	수급여부	수급총액
	① 수급받음 ② 해당사항 없음	(단위: 원)	① 수급받음 ② 해당사항 없음	(단위: 원)	① 수급받음 ② 해당사항 없음	(단위: 원)
1) 보훈급여금(연금식)	① ②	원	① ②	원	① ②	원
2) 보훈급여금(일시금)	① ②	원	① ②	원	① ②	원
3) 기초연금	① ②	원	① ②	원	① ②	원
4) 농업정정부보조금	① ②	원	① ②	원	① ②	원
5)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① ②	원	① ②	원	① ②	원
6) 아동수당	① ②	원	① ②	원	① ②	원
7) 국민연금/특수지역연금	① ②	원	① ②	원	① ②	원
8) 기타()	① ②	원	① ②	원	① ②	원

PART VIII. 가구 자산 문항 (2019년 6월 1일 기준)

※ Q24부터는 귀 닻의 자산 현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Q24.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주, 배우자, 다른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 총금액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재 거주가 자가인 경우, 현재 거주지에 대한 공시지가 포함)

- | | |
|-----------------------|-----------------------|
| ① 소유 부동산 없음 | ⑥ 2억 5천만원 이상 ~ 3억원 미만 |
| ② 1억원 미만 | ⑦ 3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 ③ 1억원 이상 ~ 1억 4천만원 미만 | ⑧ 4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 ④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⑨ 5억원 이상 |
| ⑤ 2억원 이상 ~ 2억 5천만원 미만 | |

Q25.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주, 배우자, 다른 가구원이 소유한 자동차가 존재합니까?

- ① 없다 (☞ Q27로 이동) ② 있다 (총 개수: 대) (☞ Q26으로 이동)

■ 저자약력

김문정

고려대학교 영문학, 경제학 학사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미국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빛마로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019년 확대·개편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2020년 12월 28일 인쇄
2020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주)프리비

I S B N 979-11-6655-038-6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